[UCI]I804:24011-200000234180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소 연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Current Statu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heir Solutions,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Such Accidents at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소 연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 김 영 일

이 논문을 특수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소 연

김소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남 순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희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印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예측불허의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돌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5),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박인현, 2003).

학교안전사고는 특히 정신지체학교의 경우 그 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학교안전사고 현황을 학교안전공제회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보상금이 지급된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유치원은 2,011건, 초등학교 11,891건, 중학교 8,820건, 고등학교 7,106건, 특수학교 131건이었는데, 이를 학생수 대비 사고발생 건수로 보면 유치원은 약 269명당 1건, 초등학교는 346명당 1건, 중학교는 219명당 1건, 고등학교는 246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한데 비해 특수학교는 182명당 1건으로 가장 사고발생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인리히(Heinrich)는 재해사고 발생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결함, 즉 안전에 대한 무지, 기능 미숙, 부적절한 태도 및 의욕,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3a에서 재인용), 정신지체학생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인지능력이 만 5세 이하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최성규, 2005).

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또한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Carr와 Durand(노현정, 2002에서 재인용)는 문제행동의 결과가 장애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이나 장애인의 고립, 배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였다. 이소현

과 박은혜(2006)는 장애학생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학교안전사고와 연관될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는 공격성 행동, 주의산만행동, 상동행동, 자해행동, 교출 및 무단이탈 행동, 방해 행동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기자극 행동, 거짓말이나 도벽, 사회적 회피와 고립행동, 불안·위축 행동, 정신증적 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행동, 경련성 질환, 성적 이상 행동 등이 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을 통해서도 특수학교의 사고발생 위험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 정도를 조사한 최성규(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교사에 비해 특수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담당교사의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수초등 교사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수중등, 일반초등, 그리고 일반중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성규는 인지발달이 생활연령보다 정신연령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초등 교사에 비해 특수중등 교사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의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박인현, 2003). 그러나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세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의 '장애'라는 특수한 개성에서 스스로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사고 과정에서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과다한 학생을 소수 교사가 관리하는 현실에서 장애학생의 예측 불가한 공격행동이나 돌발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는 사전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로 사고당사자, 학교, 학부모간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상대적으로 교원이 당한 사고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많은 특수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나 공격성 행동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 표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점점 여교사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정신지체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고 예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신지체학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안전사고 대책 못지않게 시급히 규명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뿐 아니라 정신지체학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및 사고를 당한 교사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은 학교 현장 실태를 알고 이에 기초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주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보고서나 연구물들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본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 현황이나 실태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그 시사점을 얻기가 어려웠다(2005, 최성규). 김부기(2002)에 의하여 정서장애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장애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사고처리 방법을 조사하면서 특수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신지체학교에서의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정신지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방법, 사고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사고처리 방법은 무엇이며, 사고처리에 대한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지체 및 학교안전사고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신지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2.22 대통령령 제 19349호)에 따르면,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말한다.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 내린 정신지체 정의에 따르면(신현기, 2004), 정신지체란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한계로서 특징 지워지는 장애이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다섯 가지 가정은 첫째, 현재 기능의 한계는 개인의 연령대와 문화에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 타당한 사정은 의사소통, 감각, 운동, 행동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도 고려해야 하고, 셋째, 개인 안에서 한계는 흔히 강점과 함께 존재하며, 넷째, 한계를 기술하는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지원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섯째, 지속적으로 적절한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면 정신지체인의 생활 기능은 대개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 학교안전

'학교안전'이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고 예방능력을 배양하는 '안전교육'과 학교안전을 유지하고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역점을 두는 '안전관리', 그리고 사고발생시 그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처리'를 포함하는 세 영역별 기능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유지되는 학교 단위의 안전활동 체제라고 할 수 있다(한광석, 1987).

・안전사고

국어대사전에서 안전사고는 “고장, 지장, 부주의, 무지 등으로 인한 사고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의 망각 또는 일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뜻한다(한국교원연수원, 2005에서 재인용).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사고 또는 학생사고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사고에는 학생이 당한 사고 외에 피해 당사자에 따라 교원이 당한 사고, 행정직원이 당한 사고, 학부모가 당한 사고, 지역주민이 당한 사고, 학교 시설물 파손, 화재 및 붕괴사고 등도 포함한 개념이다. 광의로 볼 때 학교안전사고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하며 구체적으로 첫째, 학교의 천재로 인한 사고, 교사(校舍) 파손, 물품 관리상 사고 및 도난 등 학교관리상의 사고, 둘째, 학생들의 질병, 사망, 부상, 장해, 정신질환 등의 심신의 재해와 명예훼손 및 재산상의 피해, 셋째, 교직원의 심신 재해와 명예훼손 및 재산상의 손해, 넷째, 교원과 사무직원의 여러 가지 비행사고, 다섯째, 학교 개방 중 일반인의 심신의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 여섯째,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직원 및 학생의 심신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a).

2005년 12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교육부, 2005)」(이하 “학교안전사고 법률안”)에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학교안전사고’란 교사가 실제 경험한 사고로 병원의 치료를 요하거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고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고찰

1) 학교안전사고 분류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크게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원인행위자, 장소, 피해의 내용과 정도, 교원의 임장여부로 나누고 있다. 김부기(2002)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와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별하는데, 구체적인 유형으로 인명 피해정도, 사고요인, 피해증상, 시간에 의한 분류, 장소에 의한 분류, 피해 내용 등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원인행위자, 피해의 내용과 정도, 교원의 임장여부, 인명피해 정도, 사고원인, 피해증상, 시간, 장소, 피해 내용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분류하였다.

<표 Ⅱ-1> 학교안전사고의 분류

분류기준	사고유형		
교육활동 관련성	1) 정규 교육활동	(1) 정규 교과수업	① 일반 교과수업 중 ② 실험·실습 중 ③ 체육시간 중
		(2) 정규 특별활동	① 합창·체육대회, 축제 등 교내활동 중 ②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교외활동 중 ③ 체육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 중 ④ 클럽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중
		(3) 학교급식활동 중	(4) 청소활동 중
		(5) 휴식시간 중	
	2) 비정규 교육활동	(1) 보충수업, 자율학습 중 (2) 방과후 교육활동 중	
	3) 학교의 일과 전후		
	4) 등·하교 중		

<표 Ⅱ-1> 계속

분류기준	사고유형	
원인 행위자	1) 학생자신	(1) 학생의 고의: 자살, 자해 등 (2) 학생의 부주의
	2) 교원	(1) 체벌 (2) 심리적 처벌 (3) 직무상 소홀
	3) 다른 학생	(1) 폭행 (2) 집단 따돌림 (3) 우발적 접촉 및 부주의 (4) 학생간부의 학생지도시 체벌
	4) 학교시설·설비	
	5) 식중독 등	
	6) 제3자	
피해의 내용과 정도	1) 중대사고 :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경미사고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원의 임장여부	1) 임장 중 2) 비임장중	
인명피해 정도	1) 사망사고 2) 장애사고(신체기능이 원상 복구되지 않는 재해) 3) 상해사고	
사고 요인	1) 학생간의 장난, 싸움에 의한 사고	2) 학교시설물로 인한 사고
	3)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4) 교사의 체벌로 인한 사고
	5) 교통사고	6) 수상(水上)사고
	7) 등산사고	8) 화상사고
	9) 감전사고	10) 유괴사고
	11) 폭행사고	12)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13) 중독사고(식중독, 약물중독)	
피해 증상	1) 골절	2) 염좌(삔 것)
	3) 탈골	4) 외상
	5) 타박상	6) 근육손상
	7) 뇌손상	8) 척추손상
	9) 안구손상	10) 고막손상
	11) 치아파열	12) 화상
	13) 감전	14) 식중독
	15) 약물중독	16) 정신장애
	17) 의식장애	18) 순환장애
	19) 호흡장애	20) 사망

<표 Ⅱ-1> 계속

분류기준	사고유형
시간	1) 교육활동중의 사고 (1) 체육시간, 특별활동, 청소활동 등을 포함한 교과활동 중의 사고 (2) 수학여행, 운동회, 임해훈련, 임간학교, 교외수업, 견학 소풍, 대외 경기 등 과외 활동 중의 사고 (3) 급식시간 중의 사고 2) 휴식 시간중의 사고 3) 방과 후의 사고 4) 통학 도중의 사고 5) 방학 중의 사고
장소	1) 교사(校舍)내 사고 (1) 교실(실험실)내의 사고 (2) 복도, 옥상, 화장실 교실 밖 사고 2) 교사(校舍)외 사고 - 야외학습장, 운동장, 통학버스 등 교외에서의 사고
피해 내용	1) 신체적 피해 2) 명예 훼손 3) 재산상의 피해

2)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분석

학교안전공제회의 자료를 근거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를 분석한 박인현(2003)의 연구,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자가 수집한 2003~2004년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고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고 현황을 제시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발생건수	7,681	8,071	8,481	8,367	9,265	14,481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건수	15,983	16,876	18,956	19,592	22,695	30,034

둘째, 학교안전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많이 발생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12월 13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을 상황시간대별로 볼 때, 체육활동 중에 41.2%, 휴식시간 중 32.0%, 과외활동 중

7.8%, 교과수업 중 6.3%, 청소 중 5.1%, 실험실습 중 1.7%, 기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정규 교육활동인 체육시간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휴식시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생안전사고는 주로 학생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학교안전사고는 교과수업 중 교육과정상 위험요소를 내포한 교육내용상의 사고도 있으나,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주의 산만에 기인한 학생에 의한 사고가 절대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안전사고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동료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해에도 고의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2004년 학교안전사고의 사고원인별 발생비율을 보면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77.6%였으며, 시설관리상 하자는 0.3%, 교사의 과실은 0.1%, 지병 등의 기타는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안전사고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안전사고가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의 학부모가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보상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여러 유형의 교권침해사례를 제시한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교권침해 사례 678건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교권의 침해사례는 169건으로 약 2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안전사고가 교권침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Ⅱ-3> 교권침해 사건 현황

연도별 / 유형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신분 피해	16	17.8	20	19.2	13	11.3	26	13.6	28	15.7
학교안전사고 피해	28	31.1	11	10.6	37	32.2	51	26.7	42	23.6
부당행위 피해	11	12.2	12	11.5	19	29.2	40	20.9	52	29.2
명예훼손 피해	23	25.6	29	27.9	9	4.5	17	8.9	8	4.5
교원간 갈등 피해	기타에 포함	좌동	기타에 포함	좌동	25	7.9	24	12.6	14	7.9
기타 피해	5	5.5	32	30.8	12	19.1	33	17.3	34	19.1
계	90	100.0	104	100.0	115	100.0	191	100.0	178	100.0

3) 특수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분석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및 보상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와 통계청에서 제시한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전국 시·도 학생수 대비 사고발생 건수 및 사고건수별 보상금액을 <표 Ⅱ-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4>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

학교별		학생수(명)	사고발생 건수(건)	학생수별 사고 발생 건수(건)	전체 보상금액(천원)	사고 건수별 보상금액(원)
2003년	유	478,599	1,524	314명당 1건	367,651	241,240
	초	4,147,996	8,439	492명당 1건	3,259,529	385,890
	중	1,863,055	6,948	268명당 1건	3,076,244	442,752
	고	1,771,501	5,679	312명당 1건	4,070,142	716,700
	특수	23,926	105	228명당 1건	101,988	971,314
	소계	8,285,077	22,695	365명당 1건	10,875,554	479,205
2004년	유	541,713	2,011	269명당 1건	249,270	123,953
	초	4,116,195	11,891	346명당 1건	4,294,181	361,129
	중	1,933,543	8,820	219명당 1건	4,948,075	561,006
	고	1,746,560	7,106	246명당 1건	4,366,923	614,540
	특수	23,830	131	182명당 1건	215,300	1,643,511
	소계	8,361,841	22,695	368명당 1건	10,875,554	620,125

<표 Ⅱ-4>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처리한 사고의 발생건수를 학교별로 비교했을 때, 2003년과 2004년 모두 특수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수별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별 보상금액도 특수학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특수학교의 사고건수별 보상금액은 보상금액이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보다는 약 2.7배, 유치원보다는 무려 1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별 보상금액의 차이는 사고 유형이나 다친 신체 부위, 의료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상금액을 상해의 심각성 정도로 추정해 본다면 특수학교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에 의한 안전사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판명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http://www.ketis.or.kr/sub/05.htm).

2. 학교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고찰

1) 학교안전사고 책임의 법적 근거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피해자인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교와 교원들이 당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의 자료를 참고로 학교안전사고의 관계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의 설치·경영자 등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a).

(1) 학생의 책임

첫째,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학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형법 규정에 의하여 형법상의 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민·형사상 그 책임을 져야 하나,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둘째, 학생사고는 학생상호간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두고 피해자의 일정 책임에 대하여 묻고 있다.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게을리 한 것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겹쳐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여 손해 배상 등에 있어 과실상계를 한다.

(2) 친권자 등 학부모의 책임

학부모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가진다.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부모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는 불법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도 친권자로서 일반적 지도·교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불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학교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고, 교원의 지도에 따르며, 다른 학생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신의 안전에 스스로 조심하도록 평소 가정에서의 교육을 충실히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원의 책임

민법은 교원을 대리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친권자를 대리하여 만 14세 미만의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으로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친권자인 부모가 지는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상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교사의 임장 지도가 없는 청소시간, 자율학습시간 중에 학생간 장난 또는 폭행에 의한 사고, 실험 실습 시간 중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모두 직무 수행 중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교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4)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책임

학교는 교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하에 있는 교원이 그 직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자가 교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립학교 설치·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문제로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학교안전사고의 구제 제도

교육현장에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적절하게 보상하는가의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교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리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하지 못함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용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처리방법으로 자력구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교원안전망제도 등이 있다(김대헌, 2004; 김부기, 2002).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의 입안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력구제(자체해결)

자력구제는 보상을 사고당사자와 피해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보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거나, 가해자 측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는 경우, 관련 교원들이나 또는 교직원과 학생 등이 일정 금원을 모금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방법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효과적이고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상태에 처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의외로 커질 경우 그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자체 해결 방안은 임시적이고 미봉적인 처리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서장애학교 교원들의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처리에 대한 김부기의 조사연구(2002)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양해와 피해자 부담처리의 자력구제가 45.1%,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 처리하는 자력구제가 7.3%, 학교를 매개로 하는 자력 구제 14.6%,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가 29.3%, 소송에 의한 처리가 3.7%로 나와서 자력구제가 무려 6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학교안전공

제회는 학교내외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 조성 방법, 급여 지급한도, 회원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립 이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또한 어느 정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교와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재로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에 대비하는 제도상 유일한 방법이며 학교안전사고 해결의 실적도 매년 상당한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피해정도가 큰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며,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많은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이 제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운영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자체 해결방법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방법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배상 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송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문제가 수반된다. 우선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교원, 학부모, 학생, 설치·경영자간에 상호 불신과 반목을 낳게 하고, 교원과 학생의 관계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또한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은 최소한 2년 내지 3년 이상 걸린다. 물론 국가배상 결정에 상호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종결될 수 있으나 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법정에서 그 책임을 다투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소송기일만이 아니다. 즉 소송에 따른 비용도 결코 적지 않아 피해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다른 소득도 없이 서로간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부담만 남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소송에 의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많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남게 하는 등 사회·인간적인 관계에서 결코 우선적으로 권장할만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교원안전망 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런 사고로 교원·학부모(학생)간 갈등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수준이 미흡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학부모(학생)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000년 12월에 교원안전망 제도를 마련하였다.

교원안전망 제도는 학교 교육활동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며, 관련 교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원 간에 갈등·분쟁이 생길 경우, 학교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그림 Ⅱ-1>은 교원안전망의 구도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5)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6년 5월 15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교원 경시 풍조로 인하여 교원의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실추되고 있어 학교교육의 중추인 교원이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Ⅱ-1> 교원안전망의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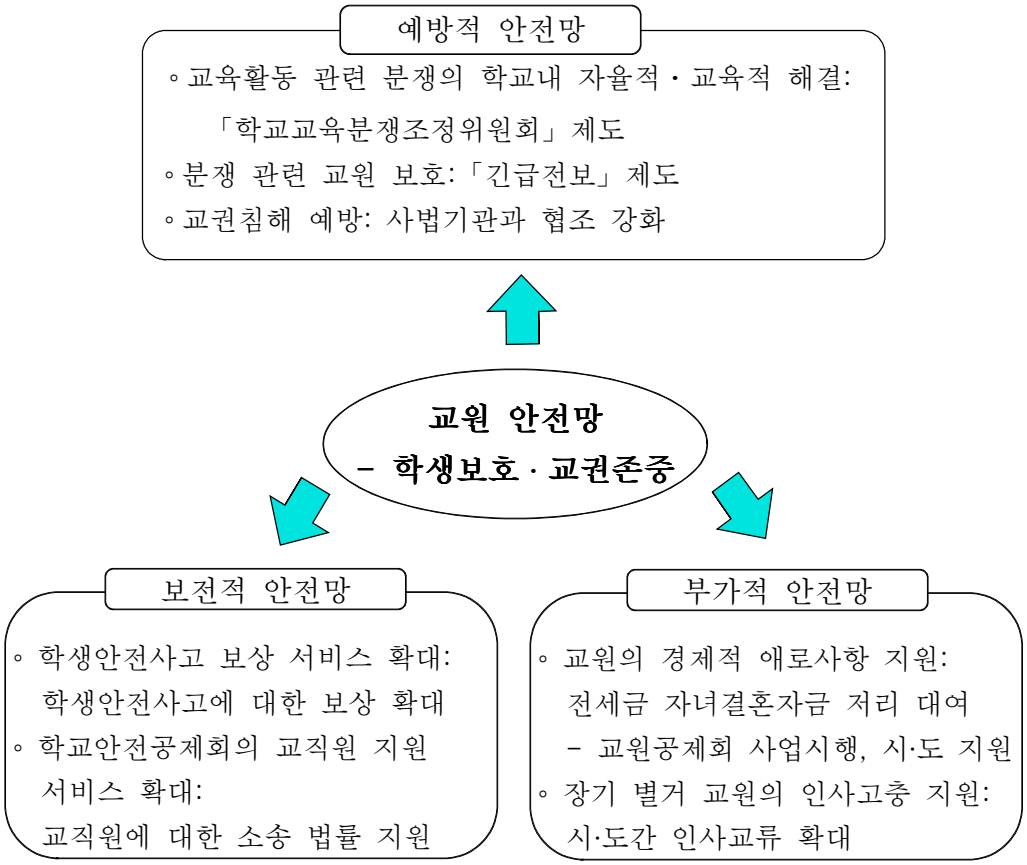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 중 여섯 번째가 “교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첫째,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교권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며, 둘째, 학교안전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추가적인 보상 요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07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에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추가하고 교원이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셋째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교권침해 사범에 대하여는『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부모에게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녀교육 상담 및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민원절차를 학교별로 마련토록 하였으며, 학생지

도방법 및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학칙에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2003a)의 자료를 근거로 현행 공제회 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구제제도의 기본 방향을 조사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은 첫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학생 상담이 미흡하였으며, 학교안전구역의 설정 등 학교 주위환경 개선 노력이 부진하였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이 취약하였는데, 먼저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면, 가.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임의적 성격의 공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확고한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 공제회는 사적 상호부조 조직으로 회원 구성과 관련자의 연결 관계를 설정하는 데 본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 안전사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합리적 분쟁조정기구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권익 신장에 애로가 있었으며, 라.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 등에 의해 책임관계가 규명되므로 교원의 신분보장에 애로가 있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가. 보상사고 및 보상대상이 제한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며, 나. 보상기준 및 한도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적정한 보상이 불가능하여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의 우발적인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았는데 학생 과실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했으며, 라.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고도 가해자나 교원을 상대로 따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마. 교원의 경우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두려워 공제회에 보상신청을 기피하고 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 선 치료•보상 후 구상이라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법률안에서는 첫째, 학교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에 우선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관리기준의 엄격 적용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둘째, 교육이 갖는 국가적 책무성을 감안하여 임의적 성격의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하고 전국단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학교안전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신속한 치료 등 긴급 구

호에 만전을 기하고, 넷째,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표 Ⅱ-5>는 현행 공제회 제도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안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Ⅱ-5> 현행 공제회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안 제도 비교

구 분	현행(학교안전공제회)	법 시행후(학교안전공제회)
1. 법적 근거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별도 법률상의 법인(안 제15조) (공제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2. 보상 기구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안 제16조)
3. 조사·연구 기능	개별 학교안전공제회 단위로 수행하므로 기능 미약	중앙단위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수행 (안 제28조)
4. 학교안전 사고 예방	형식적 예방활동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안 제5조) 안전점검실시 의무화(안 제6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작성(안 제7조) 학교 안전교육 실시 의무(안 제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5. 성 격	상호부조제도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
6. 가입자	유·초·중·고 (유치원은 선택)	의무: 초·중·고(안 제12조 제1항) 임의: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 인정 기관, 외국인학교(안 제12조 제2항)
7. 보상재원	학교회계(학교운영비), 교특(초기는 폐휴지 매각 등 모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학부모), 학교, 교직원 공동 부담(안 제50조, 제52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안 제53조)
8. 보상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포함하여 확대(안 제14조)
9. 보상기준 및 보상한도액	시·도마다 차이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안 제35조)
10. 중요정책 심의기구	-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11.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보호	교권침해사례 빈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법적책임 최소화
12. 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추가(안 제43조)
13. 보상원칙	과실여부 판단하여 보상 (과실상계 원칙)	무과실책임주의 도입(안 제43조)
14. 보상청구	학교장	학생(학부모), 교직원에게 직접청구권 인정 (안 제41조)
15. 가해자가있는 사고의 보상 등	미보상	선 치료·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안 제44조)
16.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	보상·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공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책임을 면함 (안 제45조)
17. 분쟁 처리 및 보상 심의 대책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보상심판위원회 (※전문성 미흡)	공제급여 결정 불복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안 제59조)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안 제63조) 심사제도 도입

3)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 2006. 2. 21 법률 제 7849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일부 학교 및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 생활지도가 학생 불만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도부터 초·중·고교의 학생 생활지도 방침을 '학교 및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을 2003년 4월말까지 전면 개정하도록 했는데(http://www.news.njoyschool.net), 그 구체적 지침 중 하나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학교생활규정상에 학생의 선도규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를 얻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6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른 생활지도 방향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에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간)의 인권과 자율존중 및 자율적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둘째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함양을 통하여 밝고 맑은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셋째,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학생상담의 활성화로 생명·인권 및 타인 존중의 학교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로 첫째,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15조와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는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피해학생 치료·재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학교별 전문병원 지정·운영을 명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교사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주관으로 생활지도 연수를 실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그림 Ⅱ-2>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기본 계획을 도식화한 것이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그림 Ⅱ-2>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체계

• 학교폭력 유관기관간 업무 중복 및 협력체제 미흡	문제점	• 청소년 폭력 및 음란물 범람 • 사이버 폭력 증가
•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단 구성·운영 • 학교폭력 추진체계 및 법적기반 정비 • 교육-사법·치안기관의 협력과 분담, 학교폭력 공동 대처 • 학교폭력 신고·보호 안전망	대책	•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 • On-Line 유해환경 차단 운동 전개 (PC 거실에 놓기 운동) • Off-Line 유해물 추방 및 유해업소 출입 단속

범사회적 협력 체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학교의 전문능력 제고

민주·인권·가정교육 강화

• 폭력사안 감지 및 처리능력 미흡 • 교내 상담 전문인력 부족	문제점	•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및 자녀 중심 이기주의 만연
•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제 운영 • 전문상담교사 활용, 교내상담 확대 • 학교폭력예방 교육 강화	대책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 생명 및 인권존중 교육 강화 • 유해 환경 및 매체물 극복을 위한 중심 있는 학생상 정립 • 학부모의 건전한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한 지원강화

3.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고찰

사고는 일반적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인리히는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에 기인되고 나머지 10%가 불완전한 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교원연수원,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사고는 대부분 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습관이 형성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면 사고의 감소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신지체학생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이나 정서의 자기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안전의식을 갖기가 어렵고 안전교육 실시에 의한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된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학교안전교육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교육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제12조)에서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인격에 관한 교육으로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또한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올바른 태도 및 습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기르도록 실천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명선, 신현유(2002)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모집단으로 600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88%로 아주 높았으나 21.2%는 실제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수준도 중·고등학교에서조차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재와 프로그램의 부재”가 50%, “교육과정 내용 부족”이 29.5%, “중요성의 인식 부족”이 16%로 나왔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안전교

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과제로는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5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 밖에 “안전교육 교과과정 운영”에서 26%가, “전담교사 배치”에 10%, “안전관련 행사 실시”에 8%가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은 학교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안전교육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정책 방안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교육 교과과정의 정립을 제안했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여러 교과에 걸쳐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합적인 안전교육 영역을 구축·강화하며, 안전교육 의무시간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를 배정하여 순회교육 형태의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 중 안전교육 의무시간 규정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간 21~23시간에 걸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b). 둘째, 안전교육 인력육성 및 교사 안전교육 재·보수 교육활성화를 제안했는데, 교사 안전교육 연수교육을 강화하며 이뿐 아니라 장학사, 학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연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대학에서도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 도입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안전윤리교육을 강화했는데 사고예방 요령 및 응급처치에 관한 안전교육뿐 아니라 바람직한 안전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학교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여 안전시설 보수, 안전교육, 교사 안전교육 연수, 실태조사 등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학교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현재 안전교육에 관한 시청각 교육자료나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체험과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여섯째, 안전과 사고예방의 근본원리는 타인을 배려하는 윤리 의식과 한 번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 저변에 안전문화적인 배경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사고예방의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2) 문제행동 중재

미국의 경우 1997년도에 개정된 장애인교육법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

육 대상학생들의 경우 별도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기능적 행동진단 및 평가를 통한 교수의 목표와 중재방안을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조광순, 2003).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통합교육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소현과 박은혜(2006)는 교사가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알고 그 기능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와 다양한 교수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특정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교사들은 문제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직접 문제행동에 대하여 중재하며, 필요한 경우 문제행동과 관련해서 부모나 가족과 협력한다.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와 생활지도를 교육활동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당 인원의 과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행동, 수업 이외의 잡무 등으로 인하여 중재활동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원 연수와 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별 역할과 책임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에 우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협력으로 예방활동의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12월 5일 학교안전법 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4E(Education, Environment, Enforcement, Evaluation) 정책을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4E정책”은 안전 교육(Education), 안전한 환경 및 시설 구축(Environment), 안전관련 기준 마련 및 지도・단속(Enforcement), 점검 및 평가(Evaluation)를 말한다.

4E정책을 토대로 학교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역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은 첫째, 안전 예방교육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학교 행사의 모든 계획에 학생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인하여 야외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전교육을 연간 21 ~ 23시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당 재량시간이 초등부 2~3시간, 중학부 5시간, 고등부 7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정신지체학교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전교육 시간을 좀 더 강제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 안전의식이 습관화되고, 안전한 생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기 장애유형 진단에 근거한 문제행동의 긍정적 지원과 중재를 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은 문제행동을 표출하기 이전에 잠재적인 조발행동을 형성하는 과도기를 거치므로,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 중재를 통하여 문제행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차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여 사전에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면, 시간이 경과하여 문제화되었을 때 이를 치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학생과 가족의 정서 및 미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사를 통하여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둘러싼 가정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환경을 조사할 때 가족구조 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부모의 훈육정도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 등도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행동의 예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활동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는 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지를 통하여 문제행동 예방에 노력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리하며, 학부모에게 관찰 내용을 알리고, 상담을 통하여 상호 협력한다.

넷째, 학교는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학교와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지원을 통하여 도울 수 있다. 부모교육은 자녀 양육에 힘을 북돋아 주며,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기술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는 지역사회의 전문상담기관에 소개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상담

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는 학교안전구역의 설정 등 학교 주위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다. 시설환경의 개선은 교육적 방안과는 전혀 다르지만 보완적인 접근방법으로 사용자들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을 위한 시설을 통하여, 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계시설을 둠으로 사고발생을 줄이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2) 가정의 역할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자로서 가정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역할을 알고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영한(2004)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종합대책 연구를 근거로 하여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로, 첫째, 부모는 장애 자녀의 문제 행동 및 경련성 질환이나 기타 건강상태에 대하여 학교에 고지할 책임이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자녀의 상태에 대하여 숨김없이 알림으로 학교와 교사가 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부모는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와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는 평소 가정에서의 교육을 충실히 할 의무가 있어 자녀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행위자가 될 경우 그 부모가 지도·교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책임은 교사가 지는 책임보다 더 중하다. 셋째, 좀 더 적극적인 협력 체계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지도가 가정으로 연계되므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가 동일한 교육 및 훈육 방식으로 일관되게 지도한다면 학생의 생활태도와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

(3)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학교 교육의 총괄적인 계획과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정신지체학교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지도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담임 연수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급경영을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행동 중재뿐 아니라 학업발달, 성격발달, 진로발달을 위한 인간교육의 전체적 책임과 지도를 맡고 있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새 학기 시작 전 학급담임교사들을 위한 문제행동 중재방법, 심성 훈련, 학생문제 토론 등을 실시하여 학급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학급담임교사가 원활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담임교사의 잡무량을 줄이고, 전이기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는 방침이나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장애학생들에게는 유익한 교육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는, 체험과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이나, 여가시간 선용 프로그램, 분노조절 서비스 및 심성계발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학교내 장애전문 상담가의 순회 투입 및 역할 증대를 통해서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교도교사 자격연수를 통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배출하였으나,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교사는 전무하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사 대상의 연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담임교사의 문제행동 지원 및 인성교육만으로는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치부에서 전공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학교내에 갖추고 있는 특수학교와 과정별 특수학급내에 전문적 문제행동 지원 및 상담 능력을 지닌 장애전문 상담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조기부터 예방과 치료를 통한 행동 변화의 가소성을 높이며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과정 자체도 없어 임용과 배출 방법 등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문제행동 중재를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자문을 하며, 학부모들에게 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지닌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

는 장애전담 상담교사가 배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단위의 특별 학급 운영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는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한 문제행동을 가진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더 집중적인 개별화 교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 학생을 위해서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수업권의 보장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지속적인 문제행동 발생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직에 소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행동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단위의 학급 운영을 통하여 개별화된 교육과 집중적인 중재 지도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쳐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시 원래의 학교로 복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동료 학생이나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에 대해서도 정신지체학교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제재나 징계 조치 없이 그대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계속적인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원인행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사례

다음은 정신지체학교에서의 실제 사고사례를 전국 소재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교사의 면접 및 전화 통화를 토대로, 원인 및 대책은 연구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사례 1: 공격성 행동에 의한 안구 손상 사고

(1) 사고 개요

2004년 11월 등교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타고 오던 중, 공격성 행동으로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정신지체학생이 좌석에서 이탈하여 차내를 돌아다니자,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 안전요원이 행동을 제지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이 갑작스럽게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눈을 때렸는데, 수정체가 파열되고 결국 한쪽 눈을 적출하게 되었다.

(2) 원인 및 대책

이 사고는 학생의 순간적인 공격성 행동에 의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다른 학생이 안구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실명하게 된 사고이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의 주의가 필요했고, 또한 공격성 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차량 탑승시에 미리 앞자리에 태우는 등 사전 예방이 필요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45인승 통학버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을 1명의 안전요원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도 있었다. 시설 입소자인 이 학생의 보호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의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의무에 소홀하였다. 결국 가해학생은 시설에서 퇴소 조치되어 전학을 갔으며, 피해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 처리를 통하여 장기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2) 사례 2: 교사 비임장중 학생간의 마찰에 의하여 일어난 차량 손괴 사고

(1) 사고 개요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을 집합시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 신체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 교사가 산행을 종용하던 중 시간이 지체되었고, 교사는 일단 학생들만 운동장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조치하였다. 교사가 고집을 피우는 학생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운동장에는 교사 없이 8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는데, 평소 과잉행동을 보이던 학생이 급우의 귀찮게 하는 행동을 참지 못하는 자폐학생에게 장난을 걸었다. 자폐학생은 급우의 장난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자 운동장에 세워둔 교사의 차량을 심하게 발로 차고 차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였다. 차량 수리비로 2백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차량을 파손한 학생의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였다.

(2) 원인 및 대책

이 사고는 여러 학생들의 고집성 행동과 방해 행동, 공격성 행동이 교사의 비임장중이라는 상황과 연결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뿐 아니라 수업장소인 운동장을 학교가 공사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시설 관리가 미흡하였다.

교육활동 중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항시 교사가 함께 있어야 하며, 교외활동 중에는 2명의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장의 부적절한 사용이 개

선되고 공격 무기나 피해 물품이 될 수 있는, 수업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물건 등은 없애야 할 것이다.

3) 사례 3: 지병(경련성 질환) 및 학교안전시설 관리 미흡에 의한 사고

(1) 사고 개요

계발활동 수업으로 노래방 기기를 갖춘 특별실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중 학생이 경련성 질환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특별실의 조명이 어두운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흥겹게 즐기는 가운데 이 학생을 늦게 발견하였다. 한 학생이 고함을 치며 학생을 발견했는데 불을 켜서 보니 학생이 쓰러지는 순간 이마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피부 근육조직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게 상처가 났고, 속상처와 겉상처를 두 번에 걸쳐 꿰맸다. 학생의 치료비는 교사의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되었다.

(2) 원인 및 대책

경련성 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이나 흥분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교사가 이러한 학생의 특성을 간과하였고, 사고발생 후에도 적절한 응급 대처가 부족하였다. 학교는 수업공간에 대한 안전 점검에 소홀했는데, 특별실이 너무 어둡고 다른 교실과 멀리 떨어진 밀폐된 공간이었다. 책상이나 의자 등에 모서리 보호덮개를 장착하며, 조명을 밝게 바꾸며, 환기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사례 4: 이식증에 의한 사고

(1) 사고 개요

사회복지 시설내의 파견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으로 장애정도가 심한데, 학생이 직경 2cm의 정도의 동그란 칠판용 자석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 삼켰다. 자석이 위액으로 인하여 부식되고 배변으로 배출되지 않아 결국 개복 수술을 통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2) 원인 및 대책

열약한 장애 특성을 가진 학생을 잘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파견학급에서 한

명의 교사가 학생을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급 내 물품 관리에 주의가 부족하였다.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항상 교실문을 단속하고 학생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여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5) 사례 5: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교사가 당한 사고

(1) 사고 개요

공격성 행동이 있어 평소 약을 복용하던 자폐 학생을 교사가 수업에 동참시키려고 유도하였다. 수업을 하자며 학생이 갖고 놀던 퍼즐을 치우려고 하자, 화가 난 학생이 자신의 치아가 깨지고 교사의 뼈가 보일 정도로 손가락을 깨물었다. 교사는 한 달간 공상 처리를 통하여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2) 원인 및 대책

이 학생은 평소 공격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데 사고가 있을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등교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건강 및 투약 상황을 교사와 학교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학생이 돌발적으로 교사를 공격하였다.

학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모는 자녀의 건강 및 투약 등의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정신지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총 273명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정신지체학교 75개교의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군집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을 한 결과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특수교육 요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06)에 정신지체로 분류된 특수학교에서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가 설치된 학교의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6년 6월 현재 전국의 정신지체학교(한 학교에 1개 이상의 장애영역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포함하되, 주요 장애영역이 정신지체인 학교를 선정)는 89개교였으며, 이 중 유치부만 설치되어 있는 10개교, 유치부와 초등부만 설치되어 있는 1개교, 초등부만 설치되어 있는 1개교, 고등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2개교 등 총 14개교를 제외한 전국의 정신지체학교 75개교를 대상학교의 범위로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범위가 되는 75개교에서 지역 및 설립주체 유형을 층화하여 무작위로 특수학교를 선정하였다. <표 Ⅲ-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를 소재지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기타 시·군에 소재한 학교수의 비율을 파악해 본 결과 대략 1:1:3이었으며, 설립주체 유형을 기준으로 국공·사립 학교수의 비율은 각 지역별로 대략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소재 국공·사립 각각 1개교, 광역시 소재 국공·사립 각각 1개교, 시·군 소재 국공·사립 각각 3개교, 총 10개교를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학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초·중·고등부 과정이 설치된 정신지체학교 75개교의 학교명을 각각 낱장의 카드에 적어 지역별, 설립유형별로 학교를 분류한 다음 지도교수가 직접 대상학교를 제비뽑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표 Ⅲ-1> 정신지체학교의 지역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2006년 6월 현재)

	국공립	사립	계
특별시	6	7	13
광역시	9	7	16
시 · 군	22	24	46
계	37	38	75

셋째, 연구대상은 층화군집표집 결과 선정된 학교의 초·중·고등부의 전체 교사로 하되, 1개 이상의 장애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3개 학교(부산 H학교, 대전 W학교, 경남 E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정신지체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한정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유치부, 전공과 담당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층화군집표집 결과 선정된 정신지체학교 10개교의 초·중·고등부 교사는 총 355명이었으며, 질문지 회신 결과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총 273명이었다. 학교별 연구대상 교사수와 설문에 참여한 교사수를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대상 학교별 초·중·고 교사수와 연구 참여 교사수

지역	설립유형	학교명	초·중·고등 교사수	연구참여 교사수
특별시	공립	K학교	33	17
특별시	사립	M학교	21	16
광역시	공립	H학교	40	34
광역시	사립	W학교	59	59
시·군	공립	H학교	42	21
시·군	공립	M학교	27	25
시·군	공립	E학교	23	16
시·군	사립	H학교	39	39
시·군	사립	H학교	42	24
시·군	사립	Y학교	29	22
			355	273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기초사항을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대상 기초자료

구분	계	성별		지역			설립유형		소지자격			담당학교급			
		남	여	특별시	광역시	시·군	공립	사립	특수	일반	특수·일반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중복학교급
대상자수	273	76	197	33	93	147	113	160	207	11	55	114	79	73	7
비율(%)	100	27.8	72.2	12.1	34.1	53.8	41.4	58.6	75.8	4.0	20.1	41.8	28.9	26.7	2.6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성별을 보면 여교사가 197명(72.2%), 남교사가 76명(27.8%)으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연구대상의 구성을 보았을 경우 공립은 113명(41.4%), 사립은 160명(58.6%)이었다.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특별시가 33명(12.1%), 광역시가 93명(34.1%), 시·군이 147명(53.8%)이었다. 특히 연구대상학교의 설립유형과 성별을 교차분석하였을 때,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남교사가 11명(14.5%), 여교사가 102명(51.8%)이었으나, 사립학교는 남교사가 65명(85.5%), 여교사가 95명(48.2%)인 것으로 나타나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남교사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χ^2= 31.46, p>.001).

소지자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특수교사가 207명(75.8%), 일반교사가 11명(4.0%), 특수·일반교사는 55명(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에서는 초등부 담당 교사가 114명(41.8%), 중학부 담당 교사가 79명(28.9%), 고등부 담당 교사가 73명(26.7%)이었으며, 중학부와 고등부 등 중복된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사도 7명(2.6%)이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경력은 평균 8.54년(표준편차: .78)이었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우리나라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 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였다(부록 참조). 질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교사들의 기초사항에 관한 문항들로서 성별,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교육경력, 소지자격, 담당 학교급에 관한 질문이 총 6문항이었다. 교육경력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명목변인이다.

둘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문항들로서 학생이 당한 사고와 교사가 당한 사고의 실태를 각각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서술형 응답을 요구하는 16번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명목변인이다.

셋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처리 및 대책에 관한 문항들로서 안전공제회,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질문이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명목변인이다.

넷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문항들로서 안전교육, 문제행동 중재, 학교안전사고 예방책임과 기관별 역할을 각각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교육 요구 및 실시 정도에 관한 28, 29번 문항, 문제행동 중재 및 효과에 대한 32, 33번 문항에 대해서는 5단계 평정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의 문항은 명목변인이다.

질문지 문항들은 대부분이 명목변인으로 각 문항별 내용에 맞춰 단일응답, 복수응답, 우선순위의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5단계 평정척도를 구하는 문항이 4문항, 서술형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질문지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표 Ⅲ-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Ⅲ-4> 질문지 문항 구성

구분		하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학교 안전 사고 실태	학생	· 학교안전사고 경험 횟수 · 사고발생 다발 학교급 ·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 사고원인이 되는 문제행동 유형 ·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 · 학교안전사고 상해유형 및 치료기간 · 교권침해 경험 횟수 및 피해유형	1 2 3, 5, 6, 8 4 7 9, 10 11, 12	12
	교사	· 학생 공격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 경험 · 학교안전사고 상해유형 및 치료기간 · 학생 공격행동 이후 교사의 심리	13 14, 15 16	4
사고 처리 및 대책	안전 공제회	· 사고 처리 방법 · 공제회 이용 경험 및 이용시 어려움	17 18, 19	3
	학생생활 지도	· 선도규정 및 규정에 따른 가해학생 처리 · 정신지체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선도 조치	20, 21 22	3
	학교 폭력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및 기능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장애학생 조치에 대한 적절성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23, 24, 25 26 27	5
사고 예방 및 대책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 안전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	28, 29, 30 31	4
	문제행동 중재	· 문제행동 교정의 빈도 및 효과 ·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	32, 33 34	3
	예방역할과 책임	·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별 역할	35 36, 37, 38	4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정신지체학교의 안전사고 실태, 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교사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부기(2002), 박인현(2003), 교육인적자원부(2003a, 2004, 2005) 등의 연구 및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적합한 총 40문항의 질문지를 만들었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정신지체학교 교사를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1차 예비 문항 평가를 통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적 관련이 없고 정신지체학교 교사에게 익숙하지 않아 무응답이 많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인근의 S학교와 SG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학교안전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 응답을 할 수 없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지 응답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받아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19번 문제에서 (6)번 문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8문항의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2) 본조사

이 연구의 본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층화군집표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학교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부 과정이 설치된 정신지체학교 75개교를 지역별, 설립유형별로 분류하여 지도교수가 직접 대상학교를 제비뽑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표집된 대상학교의 연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조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학교의 동의와 협조를 얻은 후 질문지를 연구대상 학교의 초·중·고등부 교사수에 맞게 학교로 우편발송하였으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9월 18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9개 학교로부터, 10월 13일에 1개 학교로부터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10개 학교로 총 355부로 발송하였으며, 총 273부를 회수하여 76.9%의 회수율을 보였다. 각 학교별로 질문지의 회수율을 정리하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학교별 질문지 회수율

설립유형	학교명	회수율(%)	설립유형	학교명	회수율
공립	K학교	51.5	공립	M학교	92.6
사립	M학교	76.2	공립	E학교	69.6
공립	H학교	85.0	사립	H학교	100
사립	W학교	100	사립	H학교	57.1
공립	H학교	50.0	사립	Y학교	75.9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 따라 최저 50%에서 최고 100%까지 회수율을 보였는데, 일부 학교에서 질문지 회수율이 낮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질문지 특성상 다년간의 교직경험이 있는 교사가 응답해야 한다는 연구부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교육경력이 짧은 교사나 기간제 교사를 질문지 응답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하였다.

4. 자료처리

단일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 반응 백분율 및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했다. 반응 백분율은 복수 응답을 한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반응한 응답의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반응한 전체수를 기준으로 그 문항에 응답한 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케이스 백분율은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한 케이스 반응수의 백분율이다.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안전교육 실시 현황, 문제행동 중재 빈도 및 그 효과를 묻는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서술형 응답을 요구한 1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8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응답이 많은 영역 순서에 따라 반응 백분율 및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교안전사고 실태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학생과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경험 빈도, 사고 발생이 빈번한 학교급,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 및 시간과 장소, 사고 원인, 상해유형, 치료기간을 조사하였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 유무 및 피해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둘째,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경험 유무, 피해증상, 치료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생의 공격에 의한 학교안전사고 경험 이후 교사의 심정을 서술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1) 학생이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1) 학교안전사고 경험 횟수

정신지체학교에 재직하면서 경험한 학교안전사고의 횟수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학교안전사고 경험 횟수

순위	경험 횟수	빈도(명)	백분율(%)
1	1~3회	165	60.5
2	4~6회	42	15.4
3	없음	41	15.0
4	7회 이상	23	8.4
	무응답	2	0.7
	계	273	100

* 무응답자의 경우 경험 횟수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타 문항의 기표 내용을 볼 때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32명의 사고경험자를 대상으로 타 질문을 통계·처리하였다.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2명(85.0%)의 교사가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65명(60.5%)은 사고 횟수가 1~3회, 42명(15.4%)은 4~6회이며, 사고 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도 23명(8.4%)이나 되었다. 반면에 사고 경험이 없는 교사는 41명(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안전사고 다발 학교급

정신지체학교에 재직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급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이 항목은 타 조사 항목과는 달리 교사가 경험한 학교안전사고뿐 아니라 목격한 사고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사고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 다른 질문 항목에 비해 무응답수가 많았다.

<표 Ⅳ-2> 학교안전사고 다발 학교급

순위	학교급	빈도(명)	백분율(%)
1	초등부	119	43.6
2	중학부	84	30.8
3	고등부	43	15.8
	중복응답	2	0.7
	무 응 답	25	9.2
	계	273	100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급은 초등부(119명, 43.6%)였으며, 다음으로 중학부가 84명(30.8%), 고등부 43명(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부와 중학부의 경우 현재 초등부와 중학부를 맡고 있는 교사수에 비해 더 많은 교사가 사고가 발생한다고 본 반면에 고등부의 경우 현재 고등부를 맡고 있는 교사수에 비해 훨씬 적은 교사만 고등부에서의 사고 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3) 학교안전사고 원인행위자

교사들이 경험한 학교안전사고가 어떤 원인행위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학교안전사고 원인행위자

순위	원인행위자	빈도(명)	백분율(%)
1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	125	53.9
2	학생간에 의한 사고	84	36.2
3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	12	5.2
4	교원에 의한 사고	1	0.4
4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사고	1	0.4
	중복응답	8	3.5
	무 응 답	1	0.4
	계	232	100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학생 자신의 자해나 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교사가 125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간의 폭행, 집단 따돌림, 우발성 접촉 및 부주의, 공격성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교사가 84명(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이 사고의 원인행위자가 된 경우가 90%를 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를 주요 사고 원인행위자로 본 경우는 12명(5.2%)이며, 교원에 의한 사고 및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사고는 각각 1명(0.4%)만이 응답하였다.

(4) 학교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행동의 유형

학교안전사고의 원인행위자가 대부분 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 장애학생의 어떤 문제행동이 사고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행동 유형

순위	문제행동 유형	빈도(명)	백분율(%)
1	공격성 행동	92	39.7
2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53	22.8
3	무단이탈 및 교출 행동	37	15.9
4	자해행동	16	6.9
5	기타	13	5.6
6	방해행동	4	1.7
	중복응답	16	6.9
	무 응 답	1	0.4
	계	232	100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교 교사 중 92명(39.7%)은 공격성 행동을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큰 문제행동 유형으로 보았으며, 53명(22.8%)은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을, 37명(15.9%)은 교출 및 무단이탈 행동을, 16명(6.9%)은 자해 행동을 학교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행동 유형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거짓말이나 도벽, 사회적 회피와 고립행동, 불안·위축 행동, 정신증적 행동, 상동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행동, 경련성 질환, 성적 이상 행동 등의 기타 행동을 사고 발생의 문제행동으로 보는 경우가 13명(5.6%)이었고, 마지막으로 방해 행동으로 응답한 경우가 4명(1.7%)이었다.

(5)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활동시간 및 장소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활동시간 및 장소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학교안전사고 다발 시간 및 장소

변인	순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시간	1	전이기 시간	149	64.2
	2	점심시간	29	12.5
	3	통학도중	12	5.2
	4	직업외 교과시간	11	4.7
	5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	10	4.3
	6	직업 교과시간	9	3.9
	7	치료교육활동 시간	0	0
		중복응답	6	2.6
		무 응 답	6	2.6
		계	232	100
장소	1	복도와 계단	89	38.4
	2	교실	65	28.0
	3	야외 학습장소	24	10.3
	4	특별실	15	6.5
	4	운동장	15	6.5
	6	통학버스	7	3.0
		중복응답	11	4.7
		무 응 답	6	2.6
		계	232	100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교에서는 학생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 상대적으로 교사의 보호·감독이 소홀하기 쉬운 쉬는 시간, 중간체육 시간 등 전이기 시간과, 점심시간에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78명(76.7%)이 이 항목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통학 도중, 직업 외 교과시간,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 직업교육시간에 거의 비슷한 교사수(약4~5%)에서 총 42명(18.1%)이 응답하였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로는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도와 계단이 89명(38.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실이 65명(28.0%), 야외 학습장소가 24명(10.3%), 특별실과 운동장이 동일하게 15명(6.5%)인 것으로 나타났다.

(6)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다양한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별로 3가지를 찾아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Ⅳ-6>과 같다.

<표 Ⅳ-6>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우선순위 / 원인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학생의 문제행동	121(52.2)	63(27.2)	28(12.1)	1.56
학급당 인원 과다	75(32.3)	81(34.9)	19(8.2)	1.68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	22(9.5)	27(11.6)	57(24.5)	2.33
가정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	6(2.6)	14(6.0)	21(9.1)	2.37
교사의 주의 및 보호 감독의무 소홀	7(3.0)	34(14.7)	62(26.7)	2.53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	·	7(3.0)	31(13.4)	2.82
교사의 체벌	·	·	3(1.3)	3.00
무응답	1(0.4)	6(2.6)	11(4.7)	
계	232(100)	232(100)	232(100)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의 제1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21명(52.2%)이 응답한 “학생의 문제행동”이다. 다음은 75명(32.3%)

이 응답한 “학급당 인원 과다”였으며,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이 22명(9.5%)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의 제2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급당 인원 과다”로 81명(34.9%)이며, 그 다음은 “학생의 문제행동”이 63명(27.2%),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이 34명(14.7%)이었다. 학교안전사고의 제3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로 62명(26.7%)이었으며, 그 다음은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이 57명(24.5%),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이 31명(13.4%)이었다.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은 전반적으로 제1원인과 제2원인, 제3원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1.56, “학급당 인원 과다”가 1.68,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이 2.33, “가정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이 2.37,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의무 소홀”이 2.53,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이 2.82, “교사의 체벌”이 3.00의 순위였다. “가정에서의 안전생활 지도부족”이 오히려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이나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보다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교사의 임장 여부와 학교안전사고의 관계

학교안전사고가 교사의 임장 여부에 따라 그 발생빈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교사의 임장 여부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순위	임장 여부	빈도	백분율
1	교사 비임장중 안전사고 발생	200	86.2
2	교사 임장 중 안전사고 발생	32	13.8
	계	232	100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는 “교사가 비임장중일 때 더 많이 발생한다”에 응답이 200명(86.2%)이며, “교사가 임장중이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에 응답이 32명(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해 유형

실제 경험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은 상해유형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해 유형

순위	상해유형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외상 피부손상	168	31.5	72.4
2	타박상	149	27.9	64.2
3	골절	89	16.6	38.4
4	염좌	64	12.0	27.6
5	탈골	15	2.8	6.5
6	근육손상	13	2.4	5.6
7	사망	12	2.2	5.2
8	화상	8	1.5	3.4
9	식중독	5	0.9	2.2
10	고막손상	4	0.7	1.7
11	치아손상	3	0.6	1.3
12	안구손상	2	0.4	0.9
12	뇌손상	2	0.4	0.9
	계	534	100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가장 많이 입는 피해유형은 외상 피부손상(살이 찢어져 꿰맨 것 포함)으로 168명(반응백분율 31.5%, 케이스백분율 72.4%)이며, 그 다음은 타박상으로 149명(반응백분율 27.9%, 케이스백분율 64.2%)이고, 골절은 89명(반응백분율 16.6%, 케이스백분율 38.4%), 염좌는 64명(반응백분율 12.0%, 케이스백분율 27.6%)이다. 그 외에 탈골, 근육손상, 화상, 식중독, 고막손상, 치아손상, 안구손상, 뇌손상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사망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12명(반응백분율 2.2%, 케이스백분율 5.2%)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9) 상해의 치료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의 상해를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표 Ⅳ-9>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기간

순위	치료기간	빈도(명)	백분율(%)
1	1주일 미만	100	43.1
2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86	37.1
3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37	15.9
4	1개월 이상	5	2.2
	무 응 답	4	1.7
	계	232	100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 치료기간은 1주일 미만이 100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이 86명(37.1%),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이 37명(15.9%), 1개월 이상이 5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권침해 경험 및 유형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이 있는지의 유무와 있다면 어떤 곤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0, 11>과 같다.

<표 Ⅳ-1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

순위	교권침해 경험	빈도(명)	백분율(%)
1	없다	172	74.1
2	있다	58	25.0
	무 응 답	2	0.9
	계	232	100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권침해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172명(74.1%)이었으며, 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58명(25.0%)이었다.

<표 Ⅳ-11> 교권침해 유형

순위	교권침해 유형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정신적 피해	50	79.4	86.2
2	금전적 피해	7	11.1	12.1
3	신체적 피해	3	4.8	5.2
3	인사상 불이익	3	4.8	5.2
	계	63	100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 58명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침해를 겪었는지 알아본 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가 50명(반응백분율 79.4%, 케이스백분율 86.2%)으로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전적 피해”가 7명(반응백분율 11.1.%, 케이스백분율 12.1%), “신체적 피해”, “인사상 불이익”이 각각 3명(반응백분율 4.8%, 케이스백분율 5.2%)이었다.

2)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1) 학생의 공격 행동에 의한 교사의 신체적 상해 경험

정신지체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교사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교사의 상해 경험

순위	상해 경험	빈도(명)	백분율(%)
1	있다	135	49.4
2	없다	71	26.0
3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57	20.9
	무 응 답	10	3.7
	계	273	100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교사가 135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격행동에 의한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교사가 71명(26%)이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공격행동을 받은 교사가 57명(20.9%)이었다. 실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교사는 총 192명(70.3%)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신변 및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3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상해 유형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순위	상해유형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타박상	95	53.7	70.4
2	외부 피부손상	48	27.1	31.1
3	근육손상	16	9.0	11.9
4	염좌	15	8.5	11.1
5	탈골	1	0.6	0.7
5	골절	1	0.6	0.7
5	고막손상	1	0.6	0.7
	계	177	100	

<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교안전사고로 타박상(95명, 반응백분율 53.7%, 케이스백분율 70.4%)을 가장 많이 입었으며, 다음으로 외부 피부손상(48명, 반응백분율 27.1%, 케이스백분율 31.1%)을 많이 입었다. 그 외에도 근육손상(95명, 반응백분율 53.7%, 케이스백분율 70.4%), 염좌(95명, 반응백분율 53.7%, 케이스백분율 70.4%)를 경험했고, 탈골, 골절, 고막손상은 각각 1명(반응백분율 0.6%, 케이스백분율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상해 유형과 비교해 볼 때 교사는 타박상을 가장 많이 입는 반면에 학생은 외부 피부손상을 가장 많이 입었고, 그 외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상해를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순위	치료기간	빈도(명)	백분율(%)
1	1주일 미만	71	52.6
2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28	20.7
3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10	7.4
4	1개월 이상	3	2.2
	무 응 답	19	14.1
	중복응답	4	3.0
	계	135	100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은 1주일 미만이 7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이 28명(20.7%),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이 10명(7.4%), 1개월 이상이 3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별 순위는 학생의 치료기간 순위와 동일하나 학생의 치료기간이 교사의 치료기간보다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의 심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유형 및 치료기간의 정도와 관계 없이 학생의 공격행동을 경험한 정신지체학교 교사 192명을 대상으로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서 총 111명의 교사가 응답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의 심리

순위	교사의 심리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화가 남	34	21.1	30.6
2	교직에 대한 회의	25	15.5	22.5
3	무력감, 우울감	22	13.7	19.8
4	학생지도 방향에 대한 고민	20	12.4	18.0
5	당황스러움, 수치심	19	11.8	17.1
6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이해함	12	7.5	10.8
7	두려움	11	6.8	9.9
8	자존심이 상함	8	5.0	7.2
	기타	10	6.2	9.2
	계	161	100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공격을 받았을 때의 교사 심리를, 연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기초로 하여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8개 항목별로 해당되는 교사의 응답을 빈도로 표시하였으며, 8개 항목과 내용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기타로 처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공격에 대하여 가장 많은 교사가 느끼는 심정은 “화가 난다”는 것(34명, 반응백분율 21.1%, 케이스백분율 30.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나 교사로서의 정체감을 상실한다”에 25명(반응백분율 15.5%, 케이스백분율 22.5%), “비참하거나 무력해지고, 배신감이 느껴져 우

울해진다"에 22명(반응백분율 13.7%, 케이스백분율 19.8), "이런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에 20명(반응백분율 12.4%, 케이스백분율 18.0%), "순간 당혹스럽고 수치심이 든다"에 19명(반응백분율 11.8%, 케이스백분율 17.1%)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는 응답과, "공격받는 순간 두렵다"라든가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타 의견으로, 교사의 안전에 대한 보호권을 제기하며 안전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5건 있었으며, 여교사의 경우에는 체격이 큰 남학생을 다루기 힘들어 한계를 느끼거나 호신술을 배워야겠다는 의견이 2건 있었다. 또한 학생이 당한 학교안전사고에는 학부모가 민감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녀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학부모가 무관심하고 교사의 신체적 상해는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3건 있었다.

2. 학교안전사고 처리 결과

이 연구의 두 번째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의 처리방법 및 향후 사고처리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학교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사고처리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이용경험 횟수 및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생활규정에 이를 처리할 선도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선도규정에 따라 가해학생을 조치한 경우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정신지체학생들에게 적용할 만한 선도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특히 장애학생의 문제를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1)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사고의 처리방법

정신지체학교 교사가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학교안전사고 처리방법

순위	처리방법	빈도(명)	백분율(%)
1	피해 학생측의 양해와 피해자 부담 처리에 의한 자력구제	100	43.1
2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처리	44	19.0
3	학교를 매개로 하는 자력구제	19	8.2
4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 처리하는 자력구제	16	6.9
5	소송에 의한 처리	1	0.4
	중복응답	14	6.0
	무 응 답	38	16.4
	계	232	100

* 이 질문에서는 중복응답이나 무응답이 많았는데, 유효 퍼센트를 감안할 경우 자력구제에 의한 사고처리는 69.5%,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처리는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의 처리는 “피해 학생측의 양해와 피해자 부담 처리에 의한 자력구제”가 100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다양한 방식에 의한 자력구제로 사고처리를 한 경우가 125명(58.2%)인 것으로 나타나 자체 해결에 의한 사고 처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처리”가 44명(19.0%)이었으며, “소송에 의한 사고처리”도 1건 있었다.

(2)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경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경험

순위	경험 횟수	빈도(명)	백분율(%)
1	없다	199	85.8
2	1회	14	6.0
3	3회 이상	7	3.0
4	2회	5	2.2
	무응답	7	3.0
	계	232	100

<표 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이용경험자는 26명(11.2%)에 그쳤으며, 1회 이용 경험자가 14명(6.0%), 3회 이상 경험자가 7명(3.0%), 2회 경험자가 5명(2.2%)이었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처리시 어려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사고처리를 한 교사를 대상으로 사고처리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처리시 어려움

순위	사고처리시 어려움	빈도(명)	백분율(%)
1	특별한 어려움 없음	14	46.7
2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8	26.7
3	부장 및 동료교사 또는 학교관리자와 관계	3	10.0
3	피해보상금의 마련	3	10.0
5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한 명예의 실추 및 도의적 가책	2	6.7
	계	30	100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사고처리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명(46.7%)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처리시의 어려움으로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지적한 응답자는 8명(26.7%)이었으며, 다음으로 “부장 및 동료교사 또는 학교관리자와 관계”나 “피해보상금의 마련”에서 각각 3명(10.0%),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한 명예의 실추 및 도의적 가책”에서 2명(6.7%)이 응답하였다.

2) 학교생활지도

(1) 학교생활규정의 선도규정 및 처리 사례

정신지체학교에 학생 폭력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는지와, 선도규정에 따라 가해학생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9, 20>과 같다.

<표 Ⅳ-19> 학교생활규정의 선도규정

순위	선도규정	빈도(명)	백분율(%)
1	없다	98	35.9
2	있다	92	33.7
3	모르겠다	81	29.7
	무 응 답	2	0.7
	계	273	100

<표 Ⅳ-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규정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된 선도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98명(35.9%)이었으며,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92명(33.7%),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81명(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학교선도규정에 따른 가해학생 처리사례

순위	선도규정에 의한 가해학생 처리경험	빈도(명)	백분율(%)
1	있다	43	46.7
2	없다	37	40.2
3	모르겠다	12	13.0
	계	92	100

<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선도규정에 의하여 가해학생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명(46.7%)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40.2%)이었다.

<표 Ⅵ-20, 21>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학교생활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선도규정에 따라 가해학생을 조치한 사례는 연구대상자 총 273명중에 43명(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지체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선도규정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하는 선도규정 중에서 정신지체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정신지체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선도규정

순위	정신지체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선도규정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176	32.4	64.5
2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6	19.5	38.8
3	출석 정지(가정학습)	81	14.9	29.7
4	학교내 봉사	62	11.4	22.7
5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55	10.1	20.1
6	학급 교체	49	9.0	17.9
7	전학	6	1.1	2.2
8	퇴학처분(고교생)	5	0.9	1.8
9	사회봉사	4	0.7	1.5
	계	544	100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지체 학생에게 적절한 선도규정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176명(반응백분율 32.4%, 케이스 백분율 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치료”가 106명(반응백분율 19.5%, 케이스 백분율 38.8%), “출석 정지(가정학습)”가 81명(반응백분율 14.9%, 케이스 백분율 29.7%), “학교내 봉사”가 62명(반응백분율 11.4%, 케이스 백분율 22.7%),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가 55명(반응백분율 10.1%, 케이스 백분율 20.1%), “학급 교체”가 49명(반응백분율 9.0%, 케이스 백분율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 “전학”이 6명, “퇴학”이 5명, “사회봉사”가 4명 있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와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취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를

실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2, 23>과 같다.

<표 Ⅳ-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순위	구성 여부	빈도(명)	백분율(%)
1	없다	111	40.7
2	모르겠다	87	31.9
3	있다	72	26.4
	무 응 답	3	1.1
	계	273	100

<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없다”에 111명(40.7%)이 응답하였고, “모르겠다”에 87명(31.9%), “있다”에 72명(26.4%)이 응답하였다.

<표 Ⅳ-23>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 조치

순위	피해학생 조치 실행 경험	빈도(명)	백분율(%)
1	있다	39	54.2
2	없다	28	38.9
3	모르겠다	5	6.9
	계	72	100

<표 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을 조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9명(54.2%)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8명(38.9%),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가 5명(6.9%) 있었다.

<표 Ⅵ-22, 23>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한 사례는 연구대상자 총 273명 중에 39명(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를 실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유형

순위	조치 유형	빈도(명)	백분율(%)
1	심리상담 및 조언	19	48.7
2	일시보호	7	17.9
3	치료를 위한 요양	5	12.8
3	학급교체	5	12.8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2.6
	중복응답	2	5.1
	계	39	100

<표 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이 19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시보호”가 7명(17.9%), “치료를 위한 요양”과 “학급교체”가 각각 5명(12.8%)이었다.

(3)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장애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신지체학생의 문제행동을 다루고 이에 따라 장애학생을 선도·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5>와 같다.

<표 Ⅳ-25>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장애학생 조치

순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여부 및 제재 조치	빈도(명)	백분율(%)
1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제재조치는 필요하다	207	75.8
2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며, 제재조치도 필요하다	35	12.8
3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제재조치도 안 된다	15	5.5
	무응답	16	5.9
	계	273	100

<표 Ⅳ-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제재조치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명(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 다루며, 제재조치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명(12.8%),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제재조치도 안 된다”는 응답이 15명(5.5%)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폭력예방교육

정신지체학교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6>과 같다.

<표 Ⅳ-26>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변인	순위	실시 여부	빈도(명)	백분율(%)
학생	1	실시한다	133	48.7
	2	실시하지 않는다	118	43.2
		무응답	22	8.1
		계	273	100
교원	1	실시한다	137	50.2
	2	실시하지 않는다	108	39.6
		무응답	28	10.3
		계	273	100
학부모	1	실시하지 않는다	149	54.6
	2	실시한다	70	25.6
		무응답	54	19.8
		계	273	100

<표 Ⅳ-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3명(48.7%),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명(43.2%)이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실시한다”에 137명(50.2%), “실시하지 않는다”에 108명(39.6%)이 응답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학생과 교원과는 달리 “실시하지 않는다”에 149명(54.6%)이 응답하여, “실시한다”고 응답한 70명(25.6%)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결과

이 연구의 세 번째 문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여부 및 선결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의 실시 여부와 효과성 및 선결 요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 및 학교, 가정, 교육청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여부

정신지체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7>과 같다.

<표 Ⅳ-27>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여부

변인	순위	내 용	빈도(명)	백분율(%)
안전교육의 필요성	1	아주 필요하다	197	72.2
	2	대체로 필요하다	61	22.3
	3	보통이다	12	4.4
	4	거의 필요하지 않다	1	0.4
		무응답	2	0.8
		계	273	100
안전교육 실시여부	1	대체로 실시한다	111	40.7
	2	보통이다	75	27.5
	3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40	14.7
	4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34	12.5
	5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9	3.3
		무응답	4	1.5
		계	273	100

<표 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3명의 연구대상자 중 258명(94.5%)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97명(72.2%)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안전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1점, “거의 필요하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필요하다”에 4점, “아주 필요하다”에 5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 평가를 하였을 때, 평균 4.68점(표준편차: .295)으로 안전교육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실시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표 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에 응답한 교사가 145명(53.2%)이었으며, “대체로 실시한

다"에 응답한 교사가 111명(40.7%)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75명(27.5%)이었으며, 반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교사는 49명(18.0%)이었다. 또한 안전교육의 실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에 1점,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실시한다"에 4점, "적극적으로 실시한다"에 5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 평가를 했을 때, 평균 3.45점(표준편차: .296)의 중상(中上)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정신지체학교 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8>과 같다.

<표 Ⅳ-28>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순위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교재나 프로그램 부재	21	42.7
2	안전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6	32.7
3	교육과정 내용 부족	10	20.4
	무응답	2	4.1
	계	49	100

<표 Ⅳ-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교재나 프로그램의 부재"에 21명(42.7%)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16명(32.7%), "교육과정 내용 부족"에 10명(20.4%)이 응답했다.

(3)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9>와 같다.

<표 Ⅳ-29>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

순위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6	46.2
2	안전교육 전담교사 배치	51	18.7
3	안전교육 교육과정 운영	44	16.1
4	안전관련 행사 실시	32	11.7
	중복응답	12	4.4
	무 응 답	8	2.9
	계	273	100

<표 Ⅳ-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은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의 첫 번째로 126명(46.2%)이 “안전교육 관련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했으며, 다음으로 “안전교육 전담교사 배치”가 51명(18.7%), “안전교육 교육과정 운영”이 44명(16.1%), “안전관련 행사 실시”가 32명(11.7%)순이었다.

2)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1) 문제행동의 중재 빈도와 효과

문제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자주 중재하고 있으며, 중재방법이 학생의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0>과 같다.

<표 Ⅳ-30> 문제행동의 중재 빈도와 효과

변인	순위	내 용	빈도(명)	백분율(%)
문제행동 중재 빈도	1	자주 중재한다	155	56.8
	2	항상 중재한다	66	24.2
	3	보통이다	44	16.1
	4	거의 중재하지 않는다	5	1.8
	5	전혀 중재하지 않는다	1	0.4
		무응답	2	0.7
		계	273	100
중재의 효과성	1	대체로 효과가 있다	125	45.8
	2	보통이다	99	36.3
	3	아주 효과가 있다	25	9.2
	4	거의 효과가 없다	22	8.1
		무응답	2	0.7
		계	273	100

<표 Ⅳ-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1명(81.0%)의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중재하고 있으며, 중재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교사는 6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 실시 여부를 “전혀 중재하지 않는다”에 1점, “거의 중재하지 않는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자주 중재한다”에 4점, “항상 중재한다”에 5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4.03점(표준편차: .295)으로 나와 문제행동 중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행동의 중재가 학생의 행동변화에 주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있다”에 125명(45.8%)이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99명(36.3%), “아주 효과가 있다”에 25명(9.2%), “거의 효과가 없다”에 22명(8.1%)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중재 효과성을 “전혀 효과가 없다”에 1점, “거의 효과가 없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효과가 있다”에 4점, “아주 효과가 있다”에 5점으로 5단계 평정척도 평가를 실시했을 때, 평균 3.56점(표준편차: .295)이 나와 중상(中上) 수준으로 중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순위별로 응답한 결과는 <표 Ⅳ-31>과 같다.

<표 Ⅳ-31>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

우선순위 / 선결요건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순위4	
학급당 인원 축소	146(53.5)	56(20.4)	57(20.9)	12(4.4)	1.76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58(21.2)	83(30.4)	91(33.3)	39(14.3)	2.40
수업 이외의 잡무 감소	40(14.7)	98(35.9)	74(27.1)	60(22.0)	2.57
문제행동 교정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	28(10.3)	34(12.5)	49(17.9)	160(58.6)	3.26
무응답	1(0.4)	2(0.7)	2(0.7)	2(0.7)	
계	273(100)	273(100)	273(100)	273273)	

<표 Ⅳ-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재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과제의 제1요건으

로 “학급당 인원 축소”의 응답이 146명(53.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58명(21.2%)이었다. 제2요건에 있어서는 “수업 이외의 잡무 감소”가 98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희망하는 응답이 83명(30.4%)이었다. 문재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과제의 제3요건으로 91명(33.3%)의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희망하였으며, 제4요건으로는 160명(58.6%)의 교사가 “문재행동 교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희망하였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를 통하여 선결 요건을 알아본 결과, 선결 요건의 제1요인으로 응답한 순서와 동일하게 “학급당 인원 축소”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업 이외의 잡무 감소”, “문제행동교정 능력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역할과 책임

(1)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책임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은 누가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2>와 같다.

<표 Ⅳ-3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책임

우선순위 / 대상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순위4	순위5	순위6	
교사	94(34.4)	61(22.3)	38(13.9)	53(19.4)	7(2.6)	11(4.0)	2.28
학교관리자	31(11.4)	40(14.7)	95(34.8)	88(32.2)	10(3.7)	·	3.02
학부모	29(10.6)	59(21.6)	52(19.0)	44(16.1)	67(24.5)	13(4.8)	3.38
학생	50(18.3)	34(12.5)	40(14.7)	30(11.0)	9(3.3)	100(36.6)	3.8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56(20.5)	10(3.7)	22(8.1)	13(4.8)	30(11.0)	131(48.0)	3.87
시도교육감	5(1.8)	60(22.0)	17(6.2)	35(12.8)	140(51.3)	8(2.9)	4.02
무응답	8(2.9)	9(3.3)	9(3.3)	10(3.7)	10(3.7)	10(3.7)	
계	273(100)	273(100)	273(100)	273(100)	273(100)	273(100)	

<표 Ⅳ-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에 있어 제1책임자로 “교사”를 응답한 경우가 94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56명(20.5%), 학생이 50명(18.3%)이었다. 제2책임자에 대해서도 “교사”로 응답한 대상자가 61명(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도교육감(60명, 22.0%), 학부모(59명, 21.6%)순이었다. 제3책임자로는 95명(34.8%)이 응답한 “학교관리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부모(52명, 19.0%), 학생(40명, 14.7%)순이었다. 제4책임자 또한 “학교관리자”가 88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53명, 19.4%), 학부모(44명. 16.1%)순이었다. 제5책임자로는 “시도교육감”에 응답한 경우가 140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가 67명(24.5%)으로 그 다음 순위였다. 제6책임자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응답이 141명(48.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이 100명(36.6%)으로 그 다음 순위였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를 통하여 책임자의 우선순위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사”였으며, 다음은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의 순이었는데, 이는 제1책임자로 “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생”, “학교관리자”, “학부모”, “시도교육감”으로 응답한 순서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3>과 같다.

<표 Ⅳ-3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우선순위 / 역할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순위4	순위5	
문제행동 지원과 중재	78(28.6)	86(31.5)	46(16.8)	42(15.4)	17(6.2)	2.38
안전 예방교육실시	83(30.4)	40(14.7)	51(18.7)	40(14.7)	54(19.8)	2.78
학교 주위환경 개선	78(28.6)	40(14.7)	27(9.9)	35(12.8)	88(32.2)	3.06
부모교육지원	14(5.1)	59(21.6)	75(27.5)	73(26.7)	44(16.1)	3.28
가정의 심리적 환경조사	15(5.5)	42(15.4)	68(24.9)	77(28.2)	64(23.4)	3.50
무응답	5(1.8)	6(2.2)	6(2.2)	6(2.2)	6(2.2)	
계	273(100)	273(100)	273(100)	273(100)	273(100)	

<표 Ⅳ-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제1역할로 “안전예방교육 실시”(83명, 30.4%)를 가장 많이 뽑았으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장애유형 진단에 따른 문제행동의 긍정적 지원과 중재”(78명, 28.6%), “학교안전 구역의 설정 등 학교 주위환경 개선”(78명, 28.6%)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제2역할로는 “문제행동의 지원과 중재”가 86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교육 지원”이 59명(21.6%)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제3역할로 첫 번째는 75명(27.5%)이 응답한 “부모교육 지원”이며, 그 다음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조사”였으며, 제4역할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조사”(77명, 28.2%)와, “부모교육 지원”(73명, 26.7%)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5역할로 높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은 “학교주위환경 개선”(88명, 32.2%)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사”(64명, 23.4%)였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를 통하여 볼 때 학교의 역할은 “문제행동의 지원과 중재”, “안전예방교육 실시”, “학교 주위환경 개선”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의 제1역할에서의 응답순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4>와 같다.

<표 Ⅳ-34>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우선순위 / 역할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자녀의 문제 행동 및 건강 고지	118(43.2)	85(31.1)	67(24.5)	1.80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행동 지도	90(33.0)	95(34.8)	86(31.5)	1.99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 협력	63(23.1)	90(33.0)	117(42.9)	2.20
무응답	2(0.7)	3(1.1)	3(1.1)	
계	273(100)	273(100)	273(100)	

<표 Ⅳ-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제1역할로 “학교 및 교사에게 자녀의 문제행동 및 건강상태에 대해 고지하는 것”에 118명(43.2%)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에 90명(33.0%),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협력”에 63명(23.1%)이 응답하였다. 제2역할로는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행동 지도”가 95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역할로는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협력”이 117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를 통하여 가정의 역할 우선순위를 볼 때 가정의 제1역할에서 응답한 순서와 동일하게 “자녀의 문제행동 및 건강 고지”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역할로 조사되었으며,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행동 지도”,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협력”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4)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5>와 같다.

<표 Ⅳ-35>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우선순위 / 역할	의견(빈도/백분율)				평균 순위
	순위1	순위2	순위3	순위4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7(39.2)	108(39.6)	34(12.5)	17(6.2)	1.85
전문상담인력 배치	85(31.1)	60(22.0)	100(36.6)	22(8.1)	2.22
생활지도능력 배양 학급담임교사 연수	61(22.3)	74(27.1)	93(34.1)	38(13.9)	2.40
교육청 단위의 특별학교(급) 운영	14(5.1)	24(8.8)	39(14.3)	189(69.2)	3.52
무응답	6(2.2)	7(2.6)	7(2.6)	7(2.6)	
계	273(100)	273(100)	273(100)	273(100)	

<표 Ⅳ-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1역할로 “실제적인 안전교육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가 107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전담 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상담 인력 배치 연계”가 85명(31.1%), “생활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담임교사 연수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61명(22.3%), “교육청 단위의 특별 학교 또는 특별 학급 운영”이 14명(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역할 또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108명(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지도 능력 배양 학급담임교사 연수”가 74명(27.1%)이었다. 제3역할로는 “전문상담 인력 배치”가 가장 많았고, 제4역할로는 “교육청 단위의 특별학교(급) 운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이 항목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대한 순위와 그 순위를 표시한 교사의 수를 곱하여 합한 후 응답한 교사의 총수로 나누어 평균 순위를 산출하였는데, 평균 순위를 통하여 볼 때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우선순위는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1역할에서 응답한 순서와 동일하게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상담 인력 배치”, “생활지도 능력 배양 학급담임교사 연수”, “교육청 단위의 특별학교(급) 운영”순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1. 학교안전사고 실태

1) 학생이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정신지체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273명 중 232명(85.0%)의 교사는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개교 정서장애학교의 150명 교사 중 142명(94.7%)이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는 김부기(2002)의 정서장애학교 학교안전사고 실태 결과와 비교할 때는 사고빈도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정신지체학교의 교사들도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 학교안전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급은 초등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부와 중학부의 경우에는 현재 이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교사가 초등부, 중학부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고등부의 경우에는 현재 이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훨씬 적은 교사가 고등부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원인행위자별 학교안전사고 유형은 90%가 학생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공하는 사고결과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학생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현황과 비교할 때 일치하였다.

셋째, 학교안전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대부분 전이기 시간과 점심시간이었다. 2004년 학교안전공제회의 사고현황에 따르면 체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1.2%에 해당하는 높은 사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신지체학교의 경우 '건강' 수업이 포함된 교과시간에 4.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휴식시간의 사고 비율 또한 전체 사고건수의 32.0% 정도였으나, 정신지체학교의 경우는 64.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전체 학교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사고 장소는 복도와 계단, 교실 등과 같이 교사내(校舍內)에서 발생하는 것이 80.2%였으며, 야외학습장, 운동장, 통학버스와 같이 교사외(校舍外)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9.8%였다. 특히 전체 학교의 경우 학

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운동장에서의 사고가 정신지체학교에서는 6.5%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간과 연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만의 독특한 상황으로 통학버스에서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법률안(제43조)에서는 이런 공제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정신지체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의 유형과 치료기간을 살펴보면, 정신지체학생들은 사고로 인하여 주로 외상 피부손상이나 타박상, 골절 등을 입었고, 상해 치료기간은 80%정도가 1주일 미만 또는 2주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김부기(2002)의 정서장애학교 안전사고 실태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여섯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이나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보다는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학급당 인원과다”,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 또는 “가정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 등의 요인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교사 변인보다는 학생과 환경의 변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현황을 알아본 결과, 학교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232명의 정신지체학교 교사 중 25%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유형은 주로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나 욕설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경력이 평균 8.54년인 정신지체학교 교사 273명이 1년에 대략 6.8건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다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2005년의 총 교원이 417,710명인 전체 학교 현황에서 당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권침해 사례가 42건인 것과 비교할 때, 교권침해 경험 여부를 질문지를 통한 사례 입수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경우 전체 교원들에 비해 교권침해 사례가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학교안전사고의 제1요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정신지체 학생의 다양한 문제행동 중에서 공격성 행동이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출 및 무단이탈 행동, 자해행동 등을 사고 유발 문제행동 유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교사의 역

할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학급당 인원 과다”는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요인이다. 이는 치료교육 활동시간에 학교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사 1인당 적정 학생수의 배정이 학생의 보호와 관리에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을 들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원인행위자를 묻는 문항에서 정신지체학교 교사 중 학교 시설·설비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본 응답자가 5.2%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4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처리된 안전사고의 경우, 시설관리상 하자에 의한 사고가 0.3%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또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편의시설 및 안전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뿐 아니라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교사가 임장중일 때보다 비임장중일 때 사고발생 비율이 훨씬 높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가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는 학생 요인, 환경적 요인, 교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 주체별로 다면적 노력을 통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행동 유형을 묻는 4번 문제를 단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교사들이 실제 경험한 모든 사고 유형을 중복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실제 이 문항에서 많은 교사들이 중복 응답을 하여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교사의 임장이나 비임장중 언제 더 자주 발생하는지를 묻는 8번 질문은, 정신지체학교의 경우 교사가 현장에 있더라도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선택 항목으로 “교사의 임장이나 비임장중 비슷하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3)번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안전사고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처럼 학생의 단순한 부주의나 우발적 행동에서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지 3번 문제의 (4)~(5)번 문항에서 원인행위자에 대한 질문은 두 문항을 한 문항으로 처리하여 “학생간에 의한 사고”와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를 “학생에 의한 사고”로만 조사하고, 질문지 7번 문제에서 (8)번 문항을 추가하여 “학생의 단순한 부주의나 우발행동”을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의

이유로 응답 항목에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

2)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273명의 정신지체학교 교사 중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험자는 70%였고, 이 중 병원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교사는 50%에 이르렀다. 상해유형은 타박상, 외부 피부손상이 많았고, 치료기간은 73%가 1주일 미만 또는 2주일 미만이었다.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의 심리로는 “화가 난다”, “특수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무력해지고 우울해진다”, “당황스럽고 수치감을 느낀다”, “무섭고 두렵다”, “자존심이 상한다” 등의 심경이 토로되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문제행동을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교사의 안전에 대한 보호권을 제기하며 안전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안전한 교육적 환경에서 소신 있는 교육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에 대한 안전 방침을 학교,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함께 중재하면서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심리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의 공격행동을 경험한 교사가 273명의 교사 중 192명이었으며, 그 중 심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식 응답을 한 교사가 111명으로 다수인 것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연구자는,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실태가 조사되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예방 및 보상 대책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학교안전사고 처리

1)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70%는 피해 학생측의 양해와 피해자 부담 처리 등의 자체 해결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한 경험자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김부기(2002)는 정서장애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처리의 경우 자력구제가 67%, 학교안전공제회 이용이 33%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특수학교에서의 사고 처리 방법은 거의 유사하나, 정서장애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 처리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47%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정신지체학교 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가 아니면, 학부모는 교사나 학교 또는 가해 학생 측에 피해보상을 적극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보상을 포기하거나 치료비 일부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면 이에 대한 취지와 이용절차를 충분히 홍보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 연구의 17번 문항은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단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교사들이 이용한 모든 사고처리 방법에 대하여 중복 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2) 학교생활지도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선도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도규정에 의하여 가해학생을 처리한 사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과의 합의를 거친 학교생활규정의 선도 조치 제·개정을 통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학생 및 부모, 가해학생 및 부모, 교사, 학교간의 분쟁 여지를 사전에 막으며, 이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 발생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선도규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응답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가정학습)” 등이다. 출석 정지와 같은 비교적 중한 징계에 81명(29.7%)의 교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교생에 경우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5명 있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하여 학교내에 위원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2명(26.4%)에 그쳤으며, 위원회를 통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는 39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도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50% 내외, 학부모 대상으로 한 경우는 25%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에 대하여 따르고 있지 않거나 또는 현장 교사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자 중 95%는 "정신지체 학생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다루거나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다루지 않더라도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볼 때 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장애특성상 문제행동을 가진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행동을 가진 학생들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고, 시행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1) 안전교육

대략 95%의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안전교육도 대체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8%였는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교재나 프로그램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일반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88%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21.2%가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며, 안전교육의 실시도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교재와 프로그램의 부재”를 가장 많이 들어 정신지체학교 교사와 동일한 응답을 보였으며, 안전교육의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 또한 정신지체학교 교사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동일하게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는 인식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지체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대부분의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정신지체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있으며, 특히 81%는 “중재를 자주 또는 항상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재 효과에 있어서는 “대체로 또는 아주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으나, “보통이다”는 응답이 대략 36%였고,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8%였다. 이를 볼 때 정신지체학교의 교사는 교육과 중재의 효과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애정도가 중증·중복화되면서 문제행동을 가진 학생의 행동 변화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급당 인원 축소”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업 이외의 잡무 감소”를 원했으며, “문제행동 중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의 희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앞서 환경적 조건 등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중재 효과성에 대하여 크게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여겨진다.

이 연구의 안전교육 실태와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안전교육 또는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한 연수가 필요한지와 이런 연수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교사의 연수교육 참여 의사를 묻고 문제행동의 중재를 위하여 교사로서 노력하려는 자세가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역할과 책임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우선순위 질문에 대하여, 정신지체학교 교사가 응답한 결과를 평균 순위를 통하여 살펴보면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순으로 응답했으나, 제1책임자로 어떤 대상을 응답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생, 학교관리자, 학부모, 시도교육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제1책임자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으나, 제6책임자에서도 가장 많이 응답해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교사 부류와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직접적 책임에 대하여 다소 관용적인 교사 부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관리자의 경우에도 제1책임자로서 보는 교사 부류는 11%에 그쳤으나 평균 순위로 보면 교사 다음으로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규(2005)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이 모두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 '교사'를 들었다. 그러나 교사자격증별로 책임자에 대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일반교사의 경우 교사(33.9%), 학생(28.3%), 학부모(22.8%), 학교관리자(13.9%), 기타(1.1%)로 응답했고, 특수교사의 경우 교사(48.1%), 학생(17.3%), 기타(13.6%), 학부모(12.3%), 학교관리자(8.6%)로 응답하여 책임의 우선순위는 동일하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보다 훨씬 더 학생이나 학부모의 책임을 낮게 보고, 반면에 교사의 책임을 가중하여 보고 있었다. 상기의 선행 연구를 이 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반교사나 다른 특수교사와는 달리,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학부모보다는 학교관리자의 책임을 더 우선적으로 보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는 정신지체학생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고의 예방 책임을 다소 낮게 보며, 교사 또한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제행동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선도규정을 통하여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학생의 책임을 엄격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학생을 보호 관리하는 것에 충실해야 하지만 만약 이런 예방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서 평균 순위를 근거로 우선순위별 활동을 제시하면 “문제행동의 지원과 중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예방교육 실시”, “학교안전구역의 설정 등 학교 주위환경 개선”, “학교와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지원”,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중재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조사된 것은 학교안전사고 원인의 1순위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고 있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에서 전체 평균 순위와 제1역할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문제행동 및 건강에 대한 학교 및 교사에게 고지”와 같은 부모의 소극적인 역할이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나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 협력”과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거는 기대가 다소 적음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최소한 자녀의 문제나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기대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또한 전체 평균 순위와 제1역할 우선순위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안전교육의 제1선결 요건으로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볼 때, 안전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와 사고 처리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밝히는 연구로서 전국 정신지체학교의 교사를 모집단으로 층화군집표집에 의해 선정된 27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학교에서는 빈번하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이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있어서도 학생뿐 아니라 교사가 당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처리는 자력구제에 의한 사고처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생생활규정이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인 안전교육은 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그 인식도에 비해 교육의 실시 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예방대책인 문제행동 중재의 경우 행동 교정을 위한 중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서는 교사의 과반수만이 행동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여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적 중재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는 교사의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정신지체라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교사와는 상대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책임은 다소 낮게 인식하고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 즉 학교, 가정,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면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당한 학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당한 학교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학교 교사의 85%는 학생이 당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하며, 사고 경험 교사 중 25%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기도 하였다.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학생이 원인행위자가 된 사고로 특히 정신지체학생의 다양한 문제행동 중에서 공격성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학교안전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전이기 시간이나 점심시간이었으며, 사고 장소는 복도와 계단, 교실 등이었다.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과 같은 교사 변인보다는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학급당 인원과다와 같은 학생과 환경 변인으로 보았다. 학교안전사고로 학생들은 주로 외상 피부손상이나 타박상, 골절 등을 입었고, 치료기간은 대부분 1주일 미만 또는 2주일 미만 정도였다.

연구대상자 중 대략 과반수의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험자까지 포함하면 70%의 교사가 학생의 공격 행동에 의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입은 상해유형으로는 타박상, 외상 피부손상이 많았고, 치료기간은 대부분 1주일 미만 또는 2주일 미만이었다. 안전한 교육적 환경에서 소신 있는 교육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를 보호하는 안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사후 처리는 구제 제도나,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조치 방법에서 많은 개선과 교사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70%의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여전히 자체 해결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이용자는 24%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조치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에 선도규정을 두며,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서도 조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학교에서는 선도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규정에 따라 가해학생을 처리한 사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사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제도권 안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나 법률을 숙지하고 이행하여 원만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인 안전교육 및 문제행동의 중재는 교사의 인식수준 및 실천과 효과성을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학교

교사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았으나, 그 인식도에 비해 안전교육의 실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항상 또는 자주” 중재하고 있었으나, 과반수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수로는 중상(中上)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은 교사,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순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가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면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노력해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주체별 주요 역할로, 학교는 문제행동의 지원과 중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 및 건강에 대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며,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들고 있었다.

3. 제언

이 연구는 정신지체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인 안전 교육의 실태 및 학교안전교육 요구도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지체학교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7차 기본교육과정 안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원이 아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및 책임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 유형을 분석하여 원인별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 현장에서 운영·실시될 때 법률안의 적합성 여부와 문제점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나 사고 이후 가해학생 조치 및 교사의 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안전사고 책임의 중심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교사가 갖는 주의 의무와 보호 감독의 범위와 한계,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2006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2006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광주.
교육인적자원부 (2000).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a).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b). 2003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5. 12. 13).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근거 마련(보도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5. 15).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 서울.
김대헌 (2004).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실태조사**: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김부기 (2002).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산.
김영한 (2004).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정책제안집, 235~244.
김정권, 여광응, 이상춘, 조인수 (1998). **정신지체아교육과 지도의 실제**. 서울 : 양서원.
남기송 (2003).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pp61~6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노현정 (2002). **기능평가에 기초한 선행사건 중심의 중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과제수행행동. 과제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서울.
박인현 (2003). 학교안전사고 실태와 법률제정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pp 3~3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신현기 (2004). **정신지체아 교수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명선, 신현유 (2002). 21세기 선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방안.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학생교육: 통합학급 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침서**. 서울: 학지사.
조광순 (2003). 기능평가에 바탕을 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2003학년도 중등교원 1정연수 교재**(pp167~179).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등교육연수원, 공주.
최성규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 **특수교육연구**, 12(1), 119~141.
한광석 (1987). **학교 안전사고 실태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0). **교원과 법률**.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6). 2004~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한국교원연수원 (2005). **안전·보건교육지도과정**.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2003). **학교 교사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06). 전국특수교육요람. 서울: 도서출판 연필.

<참고사이트>
http://www.news.njoyschool.net 즐거운 뉴스 이주영 기자(2003. 2. 12).
http://www.ketis.or.kr/sub7/05.htm (광주)학교안전공제회 (보건사회부 31510-12141: 공문대호 '91.8.26)

부 록

<부록>
정신지체학교 학생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정신지체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어려움 중 학생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및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특수학교 현장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그 특성상 일반학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특수학교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고, 안전사고 발생시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의견을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지는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9. 13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광주선광학교 교사
김소연 올림(손전화 019-9571-4251)

기초자료

다음은 선생님과 관련된 일반적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거나 응답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___(1) 남 ___(2) 여
2. 근무학교 소재지
   ___(1) 특별시 ___(2) 광역시 ___(3) 시 또는 군
3. 근무학교 설립 유형
   ___(1) 국립 ___(2) 공립 ___(3) 사립
4. 2006년 9월 현재 특수교육 경력
   만 ( )년 ( )개월
5. 소지자격
   ___(1) 특수교사 ___(2) 일반교사 ___(3)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6.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학교급은?
   ___(1) 초등부 ___(2) 중학부 ___(3) 고등부 ___(4) 여러 학교급 담당

Ⅰ. 학교안전사고 실태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번호 앞 ___란에 1개만 ∨표를 하거나 번호를 기입해주시고, 기타에는 구체적인 응답을 기록해 주십시오.

※ 본 질문지에서 학교안전사고는 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선생님께서 실제 경험하신 학교안전사고에서 병원의 치료를 요하거나 사고로 인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고에 한정됩니다.

1. 선생님은 정신지체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___(1) 없음 ___(2) 1~3회 ___(3) 4~6회 ___(4) 7회 이상

2. 선생님께서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학교안전사고는 어느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까?
___(1) 초등부 ___(2) 중학부 ___(3) 고등부
→ 1번에서 (1) 응답자는 13번으로 가세요.

3. 학교안전사고를 원인행위자에 따라 구분했을 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사고는 무엇입니까?
___(1)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사고
___(2) 학교시설 · 설비에 의한 사고
___(3) 교원에 의한 사고(체벌, 직무상 소홀)
___(4) 학생간(또는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폭행, 집단 따돌림, 우발성 접촉 및 부주의, 공격성 등)
___(5) 학생 자신에 의한 사고(자해, 지병, 학생 부주의 등)

4. 학교안전사고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문제행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___(1) 자해행동 ___(2) 공격성 행동
___(3) 주의력 결핍 · 과잉 행동 ___(4) 방해행동
___(5) 교출(학교 밖으로 나가는 행위) 및 무단이탈 행동
___(6) 기타(예 : 거짓말이나 도벽, 사회적 회피와 고립행동, 불안·위축행동, 정신병적 행동, 상동행동, 부적절한 대인관계 행동, 경련성 질환, 성적 이상 행동 등)

---

5.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활동시간은 언제입니까?

___(1) 직업교과시간 ___(2) 직업외 교과 ___(3)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시간
___(4) 치료교육활동 시간 ___(5) 점심시간
___(6) 통학 도중(스쿨버스 탑승시 포함)
___(7) 전이기 시간(청소시간, 쉬는 시간, 중간체육 시간)

6.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1) 교실 ___(2) 특별실 ___(3) 복도와 계단
___(4) 야외 학습장소 ___(5) 통학버스 ___(6) 운동장

7.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3가지를 찾아 우선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___(1) 학급당 인원 과다 ___(2) 시설 및 설치물의 결함
___(3) 학생의 문제행동 ___(4) 교사의 체벌
___(5) 교사의 주의 및 보호감독 의무 소홀 ___(6) 가정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
___(7) 학교에서의 안전생활지도 부족

8. 학교안전사고는 다음 중 언제 더 자주 발생했습니까?
___(1) 교사가 현장에 있을 때(임장중) ___(2)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비임장중)

9.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은 상해유형은 무엇입니까? 실제 피해증상이 있었던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1) 골절(뼈가 부러진 것) ___(2) 염좌(삐인 것) ___(3) 탈골(뼈가 빠진 것)
___(4) 타박상 ___(5) 근육손상 ___(6) 뇌손상
___(7) 척추손상 ___(8) 안구손상 ___(9) 고막손상
___(10) 화상 ___(11) 식중독 ___(12) 사망
___(13) 외상 피부손상(살이 찢어져 꿰맨 것 포함) ___(14) 치아손상

1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생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주로 얼마정도 걸립니까?
___(1) 1주일 미만 ___(2)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___(3)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___(4) 1개월 이상

[11~12] 다음은 교권침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 선생님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권침해를 겪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12. (11번에서 (1) 응답자만 해당)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곤란을 경험하셨는지 실제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1) 금전적 피해(과도한 금전 요구)
___(2) 정신적 피해(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욕설 등 언어적 피해)
___(3) 신체적 피해 ___(4) 인사상 불이익

[13~16] 다음은 학생의 교사 공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3. 선생님은 학생의 공격 행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본 응답자는 14번 문제로) ___(2) 없다(본 응답자는 16번 문제로)
___(3)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적은 없으나 학생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본 응답자는 16번 문제로)

14. (13번에서 (1) 응답자만 해당)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 증상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1) 골절(뼈가 부러진 것) ___(2) 염좌(삐인 것)
___(3) 탈골(뼈가 빠진 것) ___(4) 외상 피부손상(살이 찢어져 꿰맨 것 포함)
___(5) 타박상 ___(6) 근육손상 ___(7) 고막손상
___(8) 척추손상 ___(9) 안구손상 ___(10) 화상

15. (13번에서 (1) 응답자만 해당)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하는데 주로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___(1) 1주일 미만 ___(2)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___(3) 2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___(4) 1개월 이상

16. (13번 문제에서 (1), (3)번 응답자만 해당) 학생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Ⅱ. 학교안전사고 처리

[17~19]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1번에서 (1) 응답자는 20번으로 가세요.

17. 선생님께서 겪으신 학교안전사고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까?

___(1) 피해학생측의 양해와 피해자 부담 처리에 의한 자력구제
___(2) 금전적 보상으로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 처리하는 자력구제
___(3)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처리
___(4) 소송에 의한 처리
___(5) 학교를 매개로 하는 자력구제(교사 부담, 모금 등)

18.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___(1) 없다 ___(2) 1회
___(3) 2회 ___(4) 3회 이상

19. (18번의 (2), (3), (4)에 표기한 분만 해당) 공제회 이용 경험이 있다면,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___(1)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___(2) 부장 및 동료교사 또는 학교관리자와의 관계
___(3) 의료보험기관 또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___(4) 피해보상금의 마련(또는 공제급부의 수령)
___(5)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한 명예의 실추 및 도의적 가책
___(6) 특별한 어려움 없음

[20~22]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에 폭력이나 문제행동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___(3) 모르겠다

21. (20번에서 (1) 응답자만 해당) 선도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___(3) 모르겠다

22.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하는 선도규정 중에서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___(1)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___(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___(3) 학급 교체 ___(4) 전학
___(5) 학교내 봉사 ___(6) 사회봉사
___(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___(8) 출석 정지(가정학습) ___(9) 퇴학처분(고교생)

[23~27]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3.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___(3) 모르겠다

24. (23번에서 (1) 응답자만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취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___(1) 있다 ___(2) 없다 ___(3) 모르겠다

25. (24번에서 (1) 응답한 분만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했다면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___(1) 심리상담 및 조언 ___(2) 일시보호 ___(3) 치료를 위한 요양
___(4) 학급 교체 ___(5) 전학 권고
___(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26.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선생님은 학교폭력예방법 내에서 가해 장애학생의 문제를 다루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 다뤄지고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___(2)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며, 특별한 제재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___(3)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지만, 피해학생이나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재 조치는 필요하다

27.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 생 대상 : ___(1) 실시한다 ___(2) 실시하지 않는다
교 원 대상 : ___(1) 실시한다 ___(2) 실시하지 않는다
학부모 대상 : ___(1) 실시한다 ___(2) 실시하지 않는다

Ⅲ. 학교안전사고 예방

[28~31] 다음은 <u>안전교육</u>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8. 선생님은 특수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전혀 필요하지 않다 ___(2) 거의 필요하지 않다 ___(3) 보통이다
___(4) 대체로 필요하다 ___(5) 아주 필요하다

29.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는 연간 21~23시간, 중·고등학교는 연간 23시간동안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체육 시간 등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___(1)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___(2)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___(3) 보통이다
___(4) 대체로 실시한다 ___(5)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30. (29번에서 (1), (2)에 응답한 분만 해당)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교재나 프로그램 부재 ___(2) 교육과정 내용 부족
___(3) 안전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31.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선결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보급 ___(2) 안전교육 교육과정 운영
___(3) 안전관련 행사 실시 ___(4) 안전교육 전담교사 배치

[32~34] 다음은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32. 선생님은 문제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자주 중재하고 계십니까?
___(1) 전혀 중재하지 않는다 __(2) 거의 중재하지 않는다 ___(3) 보통이다
___(4) 자주 중재한다 ___(5) 항상 중재한다

33. 선생님의 문제행동 중재가 학생의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전혀 효과가 없다 ___(2) 거의 효과가 없다 ___(3) 보통이다
___(4) 대체로 효과가 있다 ___(5) 아주 효과가 있다

34. 문제행동 중재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별로 기입 해 주십시오. ( )-( )-( )-( )

___(1) 학급당 인원 축소
___(2) 수업 이외의 잡무 감소
___(3) 교원 비임장 상황이 없도록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___(4) 문제행동 중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

[35~38]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순위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___(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___(2) 시도교육감 ___(3) 학교관리자
___(4) 교사 ___(5) 학부모 ___(6) 학생

(36~38)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가정, 교육청에서 해야할 역할을 서술한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우선순위별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36. <학교의 역할> (　　)-(　　)-(　　)-(　　)-(　　)
___(1) 안전 예방교육 실시
___(2) 장애유형 진단에 따른 문제행동의 긍정적 지원과 중재
___(3)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사
___(4) 학교와 지역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지원
___(5) 학교안전구역의 설정 등 학교 주위환경 개선

37. <가정의 역할> (　　)-(　　)-(　　)
___(1) 자녀의 문제 행동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학교 및 교사에게 알림
___(2) 가정에서의 생활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___(3)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 협력

38.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　　)-(　　)-(　　)-(　　)
___(1) 생활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담임교사 연수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
___(2) 실제적인 안전교육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___(3) 장애전담 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상담 인력 배치 연계
___(4) 교육청 단위의 특별 학교 또는 특별 학급 운영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 차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학교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고찰 ····· 6
2. 학교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고찰 ····· 11
3.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고찰 ····· 21
4.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사례 ····· 27

Ⅲ. 연구방법 ····· 31
1. 연구대상 ····· 31
2. 연구도구 ····· 33
3. 연구절차 ····· 35
4. 자료처리 ····· 36

Ⅳ. 연구 결과 ····· 37
1. 학교안전사고 실태 결과 ····· 37
2. 학교안전사고 처리 결과 ····· 48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결과 ····· 55

Ⅴ. 논의 ····· 65
1. 학교안전사고 실태 ····· 65
2. 학교안전사고 처리 ····· 68
3. 학교안전사고 예방 ····· 70

Ⅵ. 결론 및 제언 ····· 74
1. 요약 ····· 74
2. 결론 ····· 74
3. 제언 ····· 76

참고문헌 ····· 78
부 록 ····· 80

표 목 차

<표 Ⅱ-1> 학교안전사고의 분류 ····· 6
<표 Ⅱ-2>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 8
<표 Ⅱ-3> 교권침해사건 현황 ····· 9
<표 Ⅱ-4>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 ····· 10
<표 Ⅱ-5> 현행 공제회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안 제도 비교 ····· 18
<표 Ⅲ-1> 정신지체학교의 지역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 31
<표 Ⅲ-2> 연구대상 학교별 초·중·고 교사수와 연구참여 교사수 ····· 32
<표 Ⅲ-3> 연구대상 기초자료 ····· 32
<표 Ⅲ-4> 질문지 문항 구성 ····· 34
<표 Ⅲ-5> 학교별 질문지 회수율 ····· 35
<표 Ⅳ-1> 학교안전사고 경험 횟수 ····· 37
<표 Ⅳ-2> 학교안전사고 다발 학교급 ····· 38
<표 Ⅳ-3> 학교안전사고 원인행위자 ····· 39
<표 Ⅳ-4>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행동 유형 ····· 39
<표 Ⅳ-5> 학교안전사고 다발 시간 및 장소 ····· 40
<표 Ⅳ-6>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 41
<표 Ⅳ-7> 교사의 임장 여부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 42
<표 Ⅳ-8>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해 유형 ····· 43
<표 Ⅳ-9>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기간 ····· 44
<표 Ⅳ-1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 ····· 44
<표 Ⅳ-11> 교권침해 유형 ····· 44
<표 Ⅳ-12> 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교사의 상해 경험 ····· 45
<표 Ⅳ-13>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 46
<표 Ⅳ-14>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 46
<표 Ⅳ-15>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의 심리 ····· 47
<표 Ⅳ-16> 학교안전사고 처리방법 ····· 49

<표 Ⅳ-17> 학교안전공제회 이용 경험 ····· 49
<표 Ⅳ-18>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처리시 어려움 ····· 50
<표 Ⅳ-19> 학교생활규정의 선도규정 ····· 51
<표 Ⅳ-20> 학교선도규정에 따른 가해학생 처리 사례 ····· 51
<표 Ⅳ-21> 정신지체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선도규정 ····· 52
<표 Ⅳ-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53
<표 Ⅳ-23>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 조치 ····· 53
<표 Ⅳ-24>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유형 ····· 54
<표 Ⅳ-25>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장애학생 조치 ····· 54
<표 Ⅳ-26>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 55
<표 Ⅳ-27>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여부 ····· 56
<표 Ⅳ-28>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57
<표 Ⅳ-29>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 ····· 58
<표 Ⅳ-30> 문제행동의 중재 빈도와 효과 ····· 58
<표 Ⅳ-31>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건 ····· 59
<표 Ⅳ-3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책임 ····· 60
<표 Ⅳ-3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 ····· 61
<표 Ⅳ-34>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 62
<표 Ⅳ-35>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 6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교원안전망의 구도 ····· 16
<그림 Ⅱ-2>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체계 ····· 20

ABSTRACT

Current Statu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heir Solutions, and Prevention Strategies of Such Accidents at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So-Youn, Kim
Advisor : Prof. Young-il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heir solutions, and the prevention strategies of such accidents at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eachers at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across the nation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by sampling 10 schools out of 75 schools based on a cluster (school) sampling with two strata (school location and type of operation). A total of 273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a questionnaire by mai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parts: (a) six items about the participants' demographic and teaching-related variables; (b) 16 item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safety accidents experienced by students and teachers, respectively; (c) eight items about the solutions for school safety accidents, including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student guidance, the School Violence Act and its regulations; and (d) 11 items related to prevention strategies of school safety accidents such as safety promotion education, interventions for problem behaviors, and the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in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13 through Oct. 13 in the fall of 2006 academic year.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85% of teachers at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had the experience of school safety accidents. It was reported that such school safety accidents most frequently occurred in hallways, stairs, and classrooms at transition periods and lunch primarily as a result of problem behavior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 major types of injuries from school safety accidents included skin damage, bruise, and bone fracture and the duration for treating such injuries in the hospital was less than two weeks. It was also reported that 70% of teachers had been injured by students and that 25% of the school safety accidents led to the violation of professional rights of teachers.

Second, 70% of teachers reported that they had solved the problems by having the stakeholders compromise each other; only 24% of the teachers used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for dealing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Schoolwide rules for guiding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were no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nough to deal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Act and its regulations was very low.

Third, the majority of teachers agreed with the need to provide safety promotion education, whereas such education was not being provided as much as they reported that it should be. The majority of teachers reported that they had employ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blem behaviors; approximately half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such strategies were effective in decreasing problem behaviors. Teachers indicated that educators, administrators, parents, and students shoul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and perform their own roles in preventing school safety accidents.